
한일관계사학회

제194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1년 6월 12일(토) 오후 2~5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차 례

▶ 사회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제1주제】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발표 : 심민정(부경대)

토론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제2주제】 무진사행에서 벌어진 일들 -유곽, 폭력사건-

발표 : 다사카 마사노리(선문대)

토론 :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제1주제】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심민정(부경대)

1. 머리말
2. 임술약조 교섭 배경
 - 1) 초량왜관 이전과 무오약조 체결
 - 2)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과 재판차왜 생성
3. 1682년 통신사행과 임술약조
 - 1) 임술약조 교섭과 강정
 - 2) 임술약조의 적용과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 후기 국교 재개 과정을 거친 후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통신사는 國書를 지참한 國王使로서 자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게 주로 일본과 조선이라는 국가대 국가의 외교업무에 주력하였다. 이는 통신사가 주로 막부 장군의 장군직 계승 축하를 위해 파견되었으며, 임진전쟁 이후 피로인 쇄환, 일본국정 탐색 등 국가 단위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1682년 통신사행은 특별한 임무를 더 수행하고 있는데, 대마도와의 약조 강정을 위해 힘썼다는 점이다. 이는 전후의 사행과는 차별되는 활동이다. 즉 대마도와 관련된 약조 강정 등의 논의는 주로 역관사행인 問慰行이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임술 통신사의 이런 특별 임무의 배경에는 초량으로 새로이 왜관이 이전한 사실이 작용했다. 조선은 새로이 이전한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대마도를 포함한 대일관계를 새로이 정비하고자 했고, 왜관 이전 직후인 1678년 문위역관 金謹行과 朴有年 등을 대마도로 파견하여 戊午約條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制札이 논의되고 있었다. 또한 1682년 통신사는 초량에 신왜관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파견된 통신사로서 국가 간의 通信이라는 대표 임무 외에 신왜관을 통한 외교질서 재편이라는 임무가 부가된 듯하다. 때문에 이 사행에서는 왜관 내 대마도인을 통제하기 위해 癸亥約條의 約條制札 내용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로 ‘壬戌約條’¹⁾도 체결하였다.

1) 임술년 통신사행에서 정약된 약조는 외교 규정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약조의 구체적 내용은 홍우재의 『동사록』과 『통신사등록』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壬戌約條라는 명칭은 윤유숙의 논문(『근세 조일통교와 비정례 차왜의 조선 도해』, 『史叢』70, 2010) 및 이훈의 연구(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에서 보인다. 약조의 조문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신사 관련 기록에서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약조가 정약된 것으로 보고 본문에서도 이하 “임술약조”로 명명한다.

임술약조는 왜관 내 대마도인 통제를 위한 계해약조와는 달리 조선으로 왕래하는 차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계해약조나 무오절목, 특히 왜관에서의 일본인 통제라는 주제에는 주목하였으나²⁾ 임술약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표인영래차왜 정비와 관련하여 임술약조의 내용을 언급한 이훈의 연구³⁾도 있으나 이 또한 일부 차왜에 한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구체적으로 다루지지 않았지만 1682년 통신사행 과정에서 초량왜관 이전 후 대표적인 일본 사신인 차왜제도 재편의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임술약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술약조는 연례송사에 대한 검대제 시행과 같은 목적으로 차왜의 검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 여부는 의심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에 임술약조의 교섭에서부터 강정, 적용까지 확인하여 초량왜관 이전 이후 차왜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임술약조의 의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2. 임술약조 교섭 배경

1) 초량왜관 이전과 무오약조 체결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구역의 설정, 공간 배치 등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대체로 왜관에 거주하게 될 왜인 실무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면이 많았다. 반면 조선 측에서는 신왜관을 통해 새로이 왜인들을 통제하고, 외교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초량왜관이 완공된 시기인 1678년 윤3월, 동래부사 李馥은 신왜관으로 왜인들이 이거하기 전에 신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7건 條目を 기록하여 조정에 진달하였다. 그리고 이 조목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후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돌아올 때 문위행으로 김근행을 보내어 상세하게 알려 협의하도록 요청했다.⁴⁾ 이 과정을 보면, 신왜관으로 이전한 후 관련 왜인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이를 대마도주의 선까지 공식화하여 약조로써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한 동래부사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처음에는 동래부사의 의견에 대해 비변사에서 굳이 대마도주에게까지 말하여 약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⁵⁾, 최종적으로는 이 7조목을 중심으로 무오약조⁶⁾가 체결되어 왜관 밖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고, 이후 약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국왕사행인 통신사까지 관여한 상황에서 임술약조, 계해약조가 성립, 제철되기에 이르렀다.

무오약조의 기초 조목이 되었던 무오절목의 내용⁷⁾은 『변례집요』와 『통신사등록』 등에 실려 있다.⁸⁾ 두 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 여부를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허지은, 「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계해약조(1683)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5, 한일관계사학회, 2001, 103~135쪽.

3) 이훈, 『조선 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4) 『변례집요』 권11 「관우」 무오(1678) 윤3월.

5) 『숙종실록』 4년(1678) 9월 5일; 『비변사등록』 숙종 4년(1678) 9월 5일.

6) 무오절목을 토대로 약정된 이 약조에 대해, 『증정교린지』 권4, 「약조」에서는 ‘朝市約條’로, 『변례집요』 권5, 「약조」에서는 1679년에 ‘문위역관이 대마도에 가서 정한 約條’로 기록하고 있으며, 『통신사등록』에서는 ‘7조목 약조’로 기록하고 있다. 허지은과 김동철은 앞의 논문에서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을 중시하여 ‘무오절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본고에서는 1679년 왜인과의 사이에 조약으로 약정되었으며 임술통신사행 이후 계해약조로 제철되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무오약조”라고 통칭한다.

7) 무오절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지은, 앞의 논문, 『한일관계사연구』 15, 2001, 103~135쪽”, “김동철, 「『국역 통신사등록』(Ⅱ) 해제」, 『국역통신사등록』(Ⅱ),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4, 43~47쪽”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1〉 무오약조의 내용과 기록여부

조목	내용	『변례집요』	『통신사등록』
1	왜관 밖 왜인 출입제한 경계 설정	○ 왜관 밖 일본인 출입제한.	○ 수문으로 경계를 정하고, 바다 밖으로는 절영도, 서쪽은 연향청, 동쪽은 송현(松峴)을 경계로 함.
2	경계를 정한 뒤 범한 자의 처벌.	○ 범한 자는 관수를 통해 대마도로 보내어 처벌(1조에 포함)	○ 경계를 범한 왜인은 관수를 통해 대마도로 보내어 처벌.
3	잠상 노부세 처벌 규정.	×	○ 잠상의 노부세 적발시 피차 (조선인과 왜인) 동죄로 처벌.
4	개시 때 대청 외 각방 매매 금지	○ 잠상의 일, 잡다한 사항은 차후 규정을 만들 것.	○ 개시 때 대청에서 역관, 상인들 간의 매매 외에 下倭들과의 각방 매매시 잠상물 적용.
5	조시 때 어채 매매는 수문 밖에서만 허가함.	○ 어채와 조시는 어지럽게 매매하는 것 금지.	○ 조시 때 어채 매매는 수문 밖에서 하고, 파시하는 즉시 入館할 것.
6	송사의 숙박 행차 때 수행원 규정	○ 송사 숙박 행차 때 품수에 따라 수행 인원수를 정하고, 민가 난입 금지.	○ 송사 숙박 행차 때 품수에 따라 수행 인원수를 정하고, 민가 난입 금지.
7	5일잡물 입급 때 조선인 관리 구타 금지	○ 5일 잡물 입급시 조선인 하급 관리 구타 금지.	○ 5일 잡물 입급시 조선인 하급 관리 구타 금지.

※ 『변례집요』 권5, 「약조」, 기미(1679) 1월; 「금조」, 무오(1678) 移館新條. 참조하여 작성.

※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참조하여 작성.

무오약조는 이복이 건의한 무오절목 7건을 중심으로 약정되었다. 각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조는 신왜관의 경계 설정 및 출입에 관한 내용이다. 두모포에 있었던 舊倭館의 경우 守門 밖 수십 보 거리에 左自川이 있어 자연적으로 경계가 되었지만, 초량에 생긴 신왜관의 경우 그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여 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신사등록』의 내용이 가장 상세한데, “新館에서는 守門 밖으로 나오면 곧 海港이고, 그 항구를 건너면 絶影島이며, 서쪽으로 나가면 宴享廳이고, 문에서 연향청까지는 겨우 1馬場이다. 동쪽은 구관(두모포왜관)으로 왕래하는 길인데, 문에서 松峴까지 백 여보에 불과하다. 연향청으로 출입하는 문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밖에서 잠귀 두고, 우리 측에서 열고 닫기 때문에 왜인이 감히 이 문으로 출입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지금 경계를 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왜인들이 수문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해항을 건너 절영도에, 서쪽으로는 연향청에, 동쪽으로는 송현을 지나지 못하도록 명백히 조정한다.”⁹⁾고 하였다. 즉 왜인들이 출입하는 왜관의 경계를 守門, 앞쪽은 절영도, 서쪽은 연향청, 동쪽은 송현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변례집요』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쪽으로는 해항을 건너 절영도, 서쪽으로는 연향청, 동쪽으로는 客舍를 넘지 못한다¹⁰⁾고 하여

8) 무오절목의 내용은 이외에도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교린지』, 『증정교린지』 등에도 실려있는데,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통신사등록』에는 7개 조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변례집요』, 『교린지』, 『증정교린지』에는 6개 조목만 제시되어 있다.

9)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동쪽의 경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 세워진 금표에는 동쪽 경계를 송현으로 설정¹¹⁾해 놓았다.

2조는 1조에 제시된 경계를 왜인들이 범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다. 『통신사등록』에는 “경계를 정한 뒤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수문 軍官와 입번 小通事와 伏兵들이 범한 자를 사로잡아 관수왜에게 들여 주어 즉시 대마도로 보내어 법대로 형벌을 행하라.”¹²⁾는 내용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두 번째 조항이 『변례집요』 및 『증정교린지』 등의 사례집과 규정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¹³⁾, 1조에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다¹⁴⁾. 아마도 범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1조와 한 조목으로 만들어야 한다¹⁵⁾는 비변사의 계를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3조는 潛商의 路浮稅 적발 시 양측 모두 一罪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변례집요』를 비롯하여 『증정교린지』, 『교린지』 등의 규정집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록이나 『비변사등록』에도 “잠상은 매매한 양측 모두 동죄이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등록』에는 이런 규정을 마련한 이유를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잠상의 노부세가 적발되어 잡힌 뒤에는 피차 같은 죄로 해야 마땅하지만 근래에는 이 일로 금벌을 행하게 되면 오직 우리나라 사람만 죽이고, 왜인은 별탈이 없으니 이 어찌 두 나라가 신의로써 처리하는 도리겠는가? 지금 이후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도 함께 일죄로 처벌하자는 뜻으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 대마도와 조정하여 함께 준행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¹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잠상의 거래로 인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이전에는 조선인만 엄히 처벌하여 근절하기 어려웠으므로 왜인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4조는 開市 때 개시대청에서의 거래 외에 몰래 각 방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을 금한다는 조목이다. 원래 개시 때에는 여러 代官倭가 조선인 역관, 상인들과 함께 개시대청에서 자리를 정해 앉고, 상인의 종과 말을 데리고 온 자들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패를 받아 들어와서 대청 아래에 줄지어 앉는다.¹⁷⁾ 이런 절차를 통해 대청에 좌정한 양측 거래자들은 정해진 물품, 수량을 꼼꼼하게 따져서 공정하게 교역하여 물러가야 한다. 그런데 下倭들이 사사로이 조선 측 상인 및 말주인들과 몰래 각 방에 들어가 매매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4조에서는 만약 개시대청에서 정해진 거래 외에 몰래 각방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잠상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¹⁸⁾ 잠상율은 3조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一罪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쌍방 간에 잠상을 엄금하려 한 의도가 보인다.

5조는 왜인들이 왜관 밖으로 왕래하여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왜인들의 활동영역을 통제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魚菜 매매를 핑계로 왜인들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어채는 朝市를 통해 조달하고, 조시가 끝나면 즉시 수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인이 몰래 여염집으로 나와서 함부로 난잡하게 행동하는 폐단은

10) 『변례집요』 권5 「禁條」, 移館新條, 무오(1678) 8월.

11) 『변례집요』 권5 「約條」, 新館禁標, 기미(1679) 10월.

12)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13) 허지은, 앞의 논문, 『한일관계사연구』15, 2001.; 김동철, 앞의 논문, 『국역통신사등록』(Ⅱ),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4.

14) 『변례집요』 권5 「禁條」, 移館新條, 무오(1678) 8월.

15) 『숙종실록』 4년(1678) 9월 5일; 『비변사등록』 숙종 4년(1678) 9월 5일.

16)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17)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18)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한정이 없다. 몰래 나온 자들은 매번 어채를 구매한다고 하니 그 간교함은 참으로 얄밉다. 다만 어채 매매를 막는다면 이 사람들의 생계가 매우 절박하게 되니 별도로 한 조목을 세워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채와 과일, 쌀 등 일생생활에서 폐지할 수 없는 물품을 매일 아침 관문 밖에 가서 팔도록 허락하고, 또한 왜인에게도 수문 밖에서 사들이는 즉시 들어가 이전처럼 여염 집에 출몰하지 말도록 각별히 조정할 것.”¹⁹⁾ 본 조목의 내용에 의하면, 1·2조와 마찬가지로 왜인들의 활동 공간에 경계를 정하고 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차후 제해약조가 제철되는 과정에서 본 조목은 2조와 함께 1조에 통합된다.

6조는 送使 등 일본 사행이 肅拜를 하기 위해 객사에 왕래할 때에 品數에 따라 수행하는 인원수를 정하여 이동하고, 뒤쳐져서 멋대로 횡행하지 말 것²⁰⁾을 정한 조항이다. 이 조목이 정해질 당시에는 초량 객사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객사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왕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등록』에는 당시의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관의 객사가 아직 새로 지어지지 않았고, 객사 터는 현재 비록 여염집은 없으나 해가 오래 되면 장차 큰 마을을 이룰 형세이다. 그러므로 만약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면 후에 막기가 어렵다. 舊館의 일로 얘기하자면, 왜관에서 객사 사이에 시골 마을이 즐비하여 송사 등이 숙배하러 왕래하면 從倭를 많이 거느리고 와서 횡행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두모포왜관 시기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송사 등을 수행하는 왜인들의 인원수를 규정하여 이런 폐단을 막고자 한 것이다.

7조는 조선인 하급 관리에 대해 왜인들의 구타를 금지하는 조목이다. 왜관을 왕래하는 역관, 접위관, 동래부사, 부산첨사 등은 그나마 중상급의 관리들이라 왜인들이 감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관왜에게 五日雜物을 들여보낼 때에는 아전과 庫直 등이 들어가 수량을 대조하여 지급한다. 이때 만약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왜인들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화를 내며 色吏, 庫子, 小通事, 部將, 門直 등을 가리지 않고 끌고 다니며 구타하고, 의관과 신체를 손상시키는 일도 잦았다.²¹⁾ 이에 왜인들의 구타를 금지하고, 만약 불만이 있더라도 동래부에 알려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7개 조목은 1678년 대마도주 宗義眞이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오고, 그 庶子 右京²²⁾이 적통을 계승하는 일이 겹쳐 이를 문위하기 위해 당상 김근행, 박유년과 당하 安愼徽 세 명의 역관을 파견²³⁾했을 때 약조로 정하였다. 처음에 관수와 동래부사가 상호간에 알아서 결정할 일이며 대마도주에게까지 역관을 파견하여 약조를 정할 일은 아니라던 비변사의 보고와 달리 문위행이 대마도에 가서 무오약조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대마도주의 기분을 흠족하게 해준 조선 측의 처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막부 장군으로부터 承嫡을 인정받게 된 상황에서 당시 동래부사 이복의 건의로 이를 치하하기 위해 문위행에 당상 1인을 더 추가하여 구색을 갖추어 주었고, 이 내용을 서계 말미에 기록해 달라는 차왜의 요구까지 들어주었으니²⁴⁾ 대마도주 측에서는 약조 강정을 순조롭게 이끌어준 것이다. 이 약조는 『증정교린지』에서는 朝市約條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이듬해인 1679년에 왜관 주변

19)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20)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변례집요』 권5 「禁條」, 移館新條, 무오(1678) 8월; 『증정교린지』 권4 「약조」.

21)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22) 우경(右京)은 종의륜(宗義倫)의 아명(兒名)이다.

23) 『증정교린지』 권6 「문위행」 「問慰各年例」

24) 『증정교린지』 권6 「문위행」 「問慰各年例」

을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고 금표를 세웠다.²⁵⁾ 또한 1682년 임술 통신사행 때 이 약조의 강력한 시행을 재요청하면서 계해약조와 약조제찰비를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과 재판차왜 생성

신왜관 조성 및 이전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연례송사가 다시 파견되고, 차왜를 통한 외교 활동이 재개되면서 조선 측에서는 이들 사신에 대한 접대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도래 횡수가 가장 많았던 표인영래차왜, 도주교환차왜, 그리고 문위역관호행차왜 및 公韓次知差倭 등을 포함하는 裁判差倭²⁶⁾는 파견횡수가 상당히 많아 늘 접대에 부담이 되었다. 표인영래차왜와 공한차지차왜의 경우는 이미 와 있던 차왜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차왜가 내도하는, 이른바 “疊到”로 인해 倭料 지급 등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²⁷⁾ 이 때문에 조선 측은 각종 차왜를 정리하여 접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표 2〉 1636년~1681년 별차왜 파견 및 접대 접위관

차왜 (대·소차왜/항·경접위관) ²⁸⁾	항접위관	경접위관
통신사호행차왜(대)	1636, 1643, 1655	
통신사호환차왜(대)	1637, 1643, 1656	
통신사청래차왜(대)	1653(내세당송신사차왜)	1636, 1642, 1681
관백생자고경차왜(대)		1642
도서청개차왜(대)		1642, 1659
도주퇴휴고지차왜(소)	1648	
조위차왜(소)		1649, 1659, 1675
진하차왜(소)		1650, 1660, 1675
관백승습고경차왜(대)		1651, 1680
도주환도고지차왜(소)	1652, 1660, 1664, 1666, 1668, 1670, 1672, 1675, 1678, 1680, 1681 (11회)	
幹事(재판)差倭(소)	1656, 1659 (2회)	
도주고부차왜(소)	1658(접위관 파견 ×)	
도주승습고경차왜(대)		1658
문위역관호행차왜 (소, 재판차왜 승계)	1660, 1663, 1665, 1666, 1667, 1671, 1672, 1673, 1678, 1679, 1680, 1681 (12회)	
표왜입송회사차왜(×)	1672, 1673, 1676, 1679	1646, 1664
표인영래차왜(소)	1627~1871(629회)	
관백신사고부차왜(대)		1680
기타 별차왜	1642(공무목 지급회사차왜) 1642(어필하사에 대한 회보) 1642(통신사절목 재가) 1645(耶蘇宗門 철폐 건) 1649(다대포침사 구타 사건) 1650(진하 도주차왜) 1651(藤智繩의 임무 교체) 1652(부채 징수 건)	1645(황당선 耶蘇宗門 철폐 건) 1646(도해역관 최의길 파견요청) 1647(청의 사정 탐지 재촉) 1648(청의 사정 탐지 건) 1667(표류네덜란드인 영거차왜) 1668(표류남만인 영거차왜) 1668, 1670, 1672(移館차왜) 1669(유황, 잠상 문제)

25) 『증정교린지』 권4 「약조」; 『변례집요』 권5 「약조」 기미(1679) 정월; 기미(1679) 10월.

26) 조선 측 사료에서 재판차왜라는 명칭은 1680년 9월 『接倭式例』에서 처음 보인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그 이전에 재판차왜의 업무를 행하고 있던 차왜들을 “재판차왜”로 통칭한다.

27) 『漂人領來臚錄』 1, 경자 2월 2일.

	1652(마필 구무 요청) 1652(조위역관 요청 건) 1653(조위역관 파견 회사) 1657(도주 에도 입성 고지) 1661, 1662(왜관 이전 문제) 1668(잡상 문제) 1671(표류인 시신 송환) 1679(표류제주인 沒死 연유고지)	1674(이관결정회사차왜) 1678(移館致謝差倭)
--	---	--------------------------------

※ 『변례집요』 권1 「별차왜」; 『接倭式例』 「差倭接待之式」 참조.

※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 38쪽
〈표 10〉의 내용에 『接倭式例』 「差倭接待之式」 자료 보충하여 작성.

우선 가장 파견횟수가 많은 표인영래차왜를 줄이기에 앞서 조선 측이 택한 방법은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한 접대를 줄이는 것이었다. 표왜입송회사차왜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표착했을 때 응접과 일본으로의 송환을 행하면,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서계를 지참하고 오는 차왜를 말한다.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 차왜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1646년, 1664년에 경접위관을 파견하여 1특송사의 예로 접대하였다. 또한 1650년에도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해 경접위관이 접대한 예가 확인된다.²⁹⁾ 그러다가 신왜관 이전이 논의되는 전후로 이 차왜에 대한 접대는 향접위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변례집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접왜식례』에 의하면, 1666년 3월 기장 경계에 표류한 왜인 11명을 입송한 데 대한 회사차왜 橘成倫이 파견되었다. 이 때 조선 측은 기존의 경접위관 접대를 향접위관으로 바꾸고 접대 인원 중 반종을 기존의 10명에서 6명으로 줄여 세견1선례로 축소 접대하였다.³⁰⁾ 이후 1667년 4월 파견된 차왜부터는 다시 1특송선의 예로 되돌렸지만 반종 인원은 줄여진 그대로 6명만 접대하였다.³¹⁾ 급기야 표왜입송회사차왜는 167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차왜의 범주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접대의 부담은 다소 경감되었고, 이후 진행될 표인영래차왜에 대한 접대 논의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왜관 이전을 계기로 접대할 차왜를 줄이려는 또 다른 시도는 “裁判差倭”에서 확인할 수 있다. 裁判³²⁾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80년 9월부터이며,³³⁾ 그 이전까지는 ‘公幹次知差倭’라는 명칭으로 불렸다.³⁴⁾ 이들의 임무는 ‘裁判’, ‘公幹’이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공적인 외교문서 및 외교업무를 조정하고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차왜라는 명칭을 얻기 전부터 관련 업무를 하는 사신이 차왜의 형태로 파견되고 있었다. 재판 업무를 하는 사신이 처음 파견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기록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주업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시작 시점을 달리 보고 있다.

28) 1682년 임술약조 이후 대소차왜의 구분 및 향경접위관의 접대 여부를 표시한다.

29)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50년 4월.

30)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66년 3월.

31)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67년 4월.

32) 재판차왜에 대해서는, ‘이혜진, 「17세기 후반 조일외교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8, 1998.’가 참조된다.

33) 『변례집요』 1권 「별차왜」 신유(1681)년 조에 재판차왜의 호칭은 1681년 7월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접왜식례』에서는 이보다 이른 1680년 9월에 재판의 명칭이 보인다.

34) 『변례집요』 권4 「재판」 경신(1680) 9월.

〈표 3〉 임진전쟁 후 업무별 재판차왜 시작 시기

활동 시작	출처	주업무	업무 내용
1601 橘智正	『交隣事考』 裁判事考 『通航一覽』 권125 裁判事考	公幹	재판의 일은 두 나라의 교제를 주관하는 것.
1634 藤智繩	『邊例集要』 권4 裁判	公幹	양국간 공무를 주관하기 위해 출래함.
1651 平成扶	『증정교린지』 권2 裁判差倭 『통문관지』 권5 裁判差倭	年限裁判	양국 공무 주관, 통신사·문위행 호행, 공작미 요청.

임진전쟁 전부터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보는 기록도 있지만, 전쟁 종결 후 새로운 국교재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표 3〉에서처럼 각 기록들이 재판의 기원을 달리 기록하고 있다. 1601년 橘智正은 조선과 일본 간에 국교가 재개되기 전 講和 요청을 위해 도래한 사절로, 강화 교섭 과정 중에 10여 차례 도래하였고, 1607년에는 회담겸쇄환사를 호행하기도 했다. 또한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橘智正은 처음에는 頭倭, 그리고 이후에는 島主差倭라는 명칭으로 파견되었지만 활동 양상으로 볼 때 양국 외교교섭에 특출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인정하여 재판의 기원으로 인식하였다.

1634년 藤智繩은 국서개작사건과 관련하여 마상제인을 요청하기 위해 조선으로 내도하였다. 그의 직명은 橘智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島主差倭였으며,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막부로부터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洪喜男 등은 대마도주 측에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선했으며, 그로 인해 兼帶 시행을 약속받게 되었다. 藤智繩은 국서개작사건의 해결에서부터 점대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이후 耶蘇敎 관련 문제로 조선에 도래했을 때에는 규약된 차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향접위관의 접대를 받기도 했다. 양국의 외교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평가한 결과 재판의 기원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1651년 재판의 기원으로 인정한 平成扶의 경우는 앞의 차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전 차왜들의 주 업무를 조일간의 외교 교섭이라고 본다면, 平成扶는 公作米制 실시와 관여했고 ‘年限裁判’라는 이칭에서도 보이듯이 이후 5년마다(甲·己年) 파견되어 公木을 쌀로 환산해 주는 公作米年限 교섭 업무를 주업무로 보았다. 만약 公幹 업무를 주업무로 파악하였다면, 1651년 7월 도래하여 橘智正의 임무를 계승한 藤智繩³⁵⁾을 재판으로 인정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平成扶를 재판의 기원으로 인식하여 재판의 주업무를 공작미연한 교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의 기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의 역할이나 업무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차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작미 교섭, 둘째 통신사와 문위행의 호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교섭 업무이다. 이 중 공작미 교섭은 도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통신사와 문위행의 호행 업무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파견 횟수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 하지만 외교 교섭 업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파견 횟수도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접대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재판이 이미 파견된 상황에서 또 다른 외교문제가 발생하면 중복하여 다른 재판을 파견하였으므로 왜관 내에 여러 재판이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³⁶⁾

35) 『변례집요』 권1 「별차왜」 신묘(1651) 7월.

이처럼 다양한 명목과 임무로 파견된 별차왜들을 접대하기에 조선은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했다. <표 2>의 ‘기타 별차왜’에서도 보았듯이 대마도에서는 접대를 받기 위해 각종 명목의 차왜를 양산하여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측이 별차왜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관을 왕래하며 公幹 업무를 전담하였던 재판차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점차 일정기간동안 한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왜관에 별도의 假家 형태로 房屋을 갖추어 상주하는 일이 늘어갔다. 외교교섭이라는 것이 한 번에 즉결해서 처리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계가 예조와 대마도를 왕복하는 동안 처분을 기다려야 했으며, 혹 왜관 내에 머무르며 타 관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며 왜관 내 상주하는 관원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재판차왜에게 담당시킨 것이다. 재판차왜가 왜관 내에 상주한다는 결정은 초량으로 신왜관 이전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관 공간 구획 설계 단계에서 당시 재판의 역할을 했던 橘成陳家를 별도로 설정³⁷⁾해 놓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은 신왜관 이전과 함께 재판차왜를 왜관에 상주시키면서 외교업무를 전담케 하여 각종 명목의 별차왜를 정리하고 접대비용을 줄여보고자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1682년 통신사가 대마도측과 임술약조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장계초에는 규정 외의 각종 차왜가 수차례 파견되어 온 것에 대해 “대개 왜관 내에는 이미 주관하는 자가 있고, 재판의 임무를 맡은 자로 재판왜가 왕래하면서 일을 맡아보고 있으니, 별도로 사자를 보내어 서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³⁸⁾라며 각종 별차왜의 임무를 재판차왜에게 일임시킬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즉 신왜관 이전과 무오약조가 체결되면서 조선은 다음 순서로 차왜의 재정비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통신사행 편에 임술약조의 체결을 임무로 부여하였다.

3. 1682년 통신사행과 임술약조

1) 임술약조 교섭과 강정

1681년에 통신사를 요청하는 차왜가 조선에 도착했다. 1655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초량으로 신왜관이 이전한 이후로는 처음 요청된 사행이라 조선 측은 이전의 통신사와는 다소 달리 인식한 듯하다. 숙종 7년(1681) 6월 기사에 의하면 ‘일본(日本)에서 옛 병오년(1606)에 통신사를 청하였다가, 병신년(1656) 이후에는 다시 청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關白 源綱吉이 새로 서자, 통신사를 청한 것이었다.’³⁹⁾하여 통신사청래차왜의 파견이 오랜만이라는 점, ‘관백이 새로 서는데 대한 축하’라는 목적을 강조한 점이 확인된다. 1606, 1617, 1627년의 대일 사행은 회담검쇄환사로 전쟁 후 피로인 쇄환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1636년 사행은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백의 입지 강화를 위한 일본 측의 요청과 동시에 대마도와의 검대제 시행을 이루어내려는 조선 측의 목적이 있었다. 1643년 사행은 관백의 아들 탄생 축하라는 특수한 이유로 통신사가 요청·파견되었다. 1655년 사행은 이후 통신

36) 심민정, 앞의 박사학위 논문, 62~64쪽.

37) 『변례집요』 권11 「관우」 병진(1676) 7월.

38)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 10월 23일.

39) 『숙종실록』, 7년(1681) 6월 24일 을사.

사를 요청하는 본 목적에 해당하는 새로운 관백의 승습에 해당하는 사행 파견이었으나 여전히 닛코 致祭를 겸행하여 조선 주도의 교린질서 재편 의지가 강력하게 요구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681년 통신사청래차왜는 앞으로의 통신사 파견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고, 새로운 교린질서를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할 만한 사행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초량왜관 이전 후 1678년 문위행의 파견으로 무오약조가 체결되고, 그 이듬해에 초량왜관 경계와 금표까지 설치되었지만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는 조선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표를 세운지 두어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館倭들이 멋대로 금령을 어기고 관문 밖으로 횡행한 사건⁴⁰⁾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公作米를 入給시키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代官倭 6명이 하인 20여 명을 데리고 송현을 넘어 왜관을 무단이탈하였는데, 이로 인해 조선이 대마도에 약조제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⁴¹⁾ 결국 동래부사 남익훈은 무오약조의 실제적 운용을 포함하여 차왜 및 세견선 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조를 논의하는 임무를 이번 통신사행에 요청하도록 장계를 올려 청하였다.

가) ... 부사(府使) 남익훈(南益薰)이 장청(狀請)하기를,
"전일 약조한 일금 가치를 관중(館中)에 입패(立牌)하고, 이 뒤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결같이 약조에 따라 시행하여 결코 용서하지 말며, 차왜(差倭)의 왕래가 잦고 세선(歲船)의 비용이 많은 것이 참으로 한 도(道)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니, 청컨대 사신(使臣)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가서 이 세 가치를 잘 말하고 사리에 따라 타일러서 타결하여 오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⁴²⁾

이상 남익훈의 장계에 의하면, 1682년 통신사행에 부가된 임무는, ① 7건의 무오약조를 왜관 내에 입패하여 신칙하게 하는 것, ② 차왜의 왕래를 줄이고, ③ 세견선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정사, 부사, 종사관의 삼사를 선발하는데 양국 관계의 현안을 잘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외교전문가로 선발하였다. 특히 통신 정사였던 윤지완(尹趾完)은 경상감사로 재임했던 경험을 살려 가)에서처럼 부가된 임무를 원활히 해결하고, 차후 울릉도 영유권 시비나 공작미 지급연한 문제, 일본국왕호로의 국서개찬 문제 등 외교적 역량을 충실히 발휘한 인물⁴³⁾로 대표된다.

이처럼 역량이 충분한 윤지완이었지만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인식하였다.

나) 대신(大臣)과 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윤지완이 말하기를,
"세견선(歲遣船)이 떠나올 때 중첩해서 차왜(差倭)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과 약조(約條)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뜻을 신(臣) 등으로 하여금 저 나라에 주선하게 하였었는데, 저들이 만약 듣지 않으면 도리어 나라에 욕되는 결과가 되므로,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모두 말하기를,
"약조(約條)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로부터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 말을 비록 듣지 않더라도 잘못은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견선(歲遣船)의 일은 사신(使臣)이 직접 말하게 할 필요가 없다면, 역관(譯官)의 무리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상의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지완 등에게 명하여 형세를 보아서 언급하게 하였다.⁴⁴⁾

40) 『숙종실록』, 8년(1682) 3월 5일 계축.

41) 『蓬萊故事』, 『朝鮮學報』 57, 1970, 121~122쪽.(허지은, 앞의 논문, 2001, 재인용)

42) 『숙종실록』, 8년(1682) 3월 5일 계축.

43) 장순순, 「조선후기 대일교섭에 있어서 尹趾完의 通信使 경험과 영향」,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89~132쪽.

나)의 내용을 보면, 7조목 제창 건 외에 세전선과 관련한 논의사항들은 삼사가 아니라면 역관이 상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즉 세전선 관련 논의의 담당자는 역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인지 1682년 통신사행으로 파견된 역관들은 이전 사행과는 달리 2명이나 사행록을 남기고 있다. 그만큼 약조의 논의 등에 대해 충실히 기록하려 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특히 홍희남은 『동사록』에서 대마도주와 삼사신간의 논의 내용과 약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사행록에 반영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논의 사항 중 세전선 접대 폐해와 관련한 부분은 통신사행이 출선하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기존에 1655년 사행까지는 통신사행 준비로 조선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연례송사까지 내도하면서 접대가 중첩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는데, 1682년 임술사행부터는 통신사행이 있는 경우 1년 동안 연례송사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대마도 측에서 허가하여⁴⁵⁾ 이후 정례화되었다. 물론 조선 측은 세전선 접대제를 추가로 실현할 생각이었지만 긴요함이 덜하다고 결론을 내렸고⁴⁶⁾, 이로 인해 임술사행에서는 무오약조를 제창하는 일과 차왜를 재정비하여 조선의 접대 부담을 경감할 것을 논의하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다.

통신 삼사에게 주어졌던 임무, 즉결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전 당상역관 박재흥(朴在興)을 통해 사전 의중 파악이 진행되었다. 사행 귀로에서 대마도에 다시 들른 통신 삼사는 근간에 대마도주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곧 이 사안을 결정하려 한다는 내용의 장계초를 기록하였다.⁴⁷⁾ 몇일 후 장계를 지참한 선래군관과 역관이 조선으로 출발하자 대마도주가 삼사신에게 문안을 하러 왔다. 이에 삼사신은 왜관의 일을 잘 알고 있으며 1653년 통신사청래차왜로도 내도했던 藤成時를 청하여 본격적으로 임술약조 관련 내용을 요청하였다.⁴⁸⁾ 사행 출발 전 楊前에서 재결하였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재조정되었는데 통신 삼사 측에서 요구한 내용은, ① 규정한 것 이외의 별차왜를 더 출송하지 말 것 ② 왜관 주변에 경계를 정하여 무오약조의 7조목을 뜻말에 세워 申明할 것 ③ 代官의 수가 너무 많아 무역 관련 폐해가 많으니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 사항은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거듭 강조하였다.⁴⁹⁾

대마도에서의 마지막 연향이 끝난 후 대마도주, 봉행왜, 재판왜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삼사신은 당상역관을 통해 거듭 약조할 내용을 전달하였다. 앞서 藤成時에게도 전달했던 본 내용은 조선 측 3명의 당상역관이 문서에 기록하여 聯名하였다.⁵⁰⁾ 세 당상역관 연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三堂聯名書

- 一. 초량왜관 이전 후 약조한 7조목을 기재하고 왜관 중에 세워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는 등의 폐단 발생 시 대마도에 바로 알려 조치를 취할 것.
- 一. 규정 외의 별차왜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
왜관 내에는 담당관과 재판왜가 이미 있으니 별도의 차왜를 보낼 필요가 없다.

44) 『숙종실록』 8년(1682) 5월 6일 계축

45) 『통신사등록』 3책, 임술(1682) 3월 2일.

46)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47)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18일.

48)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1일.

49)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1일.

50)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3일.

표인영래차왜의 경우도 별도로 보내지 말고 대관에게 순부하도록 할 것.⁵¹⁾

다) 당사역관의 연명서를 보면 대관의 수를 줄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다. 하지만 차후 이 연명서를 비롯한 기존 요구 사항들에 대한 대마도 측의 답서에는 무역 폐해를 없애고 대관을 줄이는 일이 추가되었다. 통신사가 요구한 내용은 대마도 봉행왜인들의 연명낙인으로 마무리되었다.

라) 봉행왜인들의 연명서

ㄱ. 규정된 것 이외의 차왜를 보내지 않겠다.

표류인 호송은 경중을 가려 처리할 것이고, 일반 표류인은 대관에게 순부하겠다.

ㄴ. 초량왜관 이전 후 체결한 무오약조는 대마도와 조선 모두 엄칙할 것.

ㄷ. 왜관 매매시 폐해는 양측이 모두 노력하고, 대관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⁵²⁾

봉행왜인들이 연명한 3항목 중 2항은 1683년 계해약조로 정약되고 왜관에 입패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계해약조 외의 나머지 조항들은 임술약조로 명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규정된 것 이외의 차왜는 보내지 말 것, 둘째, 표류인 영송시 별도의 차왜를 보내지 말고 대관에게 순부하게 할 것, 셋째, 양국 매매시 담당 대관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상 임술약조가 논의되고 약정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당초에 이 세가지 항목 외에 세견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세견선 수를 감하는 내용도 합의하려 하였으나 통신 삼사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차왜의 일을 조정하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2) 임술약조의 적용과 의미

임술약조의 강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조약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찾기 힘들어 한편으로는 ‘이 약조가 정말 실재한 것인가?’ 혹은 ‘실재했다면 효력이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술약조에 근거하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실재 약조를 적용하는 사례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본다.

(1) 규정 외 차왜 파견 금지

임술약조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정된 것 이외의 차왜를 파견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홍우재의 『동사록』 1682년 10월 23일에 기록된 삼사신의 聯名書에는 기존까지 파견되었던 차왜를 조선이 접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초에 여러 임무를 겸한 사자를 보내도록 한 것은, 수많은 사자가 계속해서 도래할 시에 진실로 잘 접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홍역관이 왕복하여 결정(세견송사의 겸대 시행)을 보았다. 그런데 그 후 대마도에서 사자(차왜)라 칭하는 자를 수차례 파견하였으므로 예조에서는 규정 외의 사자라 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은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조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사자를 보내니,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도리에 비추어 서운하게 할 수 없어 접대를 허가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⁵⁴⁾ 즉 기존까지 대마도에서 각종 명목으로 보낸 차왜를 조선이 접대한 것은 교린국

51)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3일.

52)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7일.

53) 세견선의 일과 차왜의 일에 관한 결정 사항은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간의 “厚待”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접대를 담당할 동래의 물력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차왜를 줄이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대책으로 삼사는 재판왜를 활용하도록 했다. 재판왜는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공적인 외교문서 및 외교업무를 조정하고 주관하는 임무를 가진 차왜로, 조선 측 사료에서 ‘재판(裁判)’이라는 명칭이 처음 보이는 것⁵⁵⁾은 1680년 9월부터인데 이때 임명된 재판 등성구(藤成久)는 문위역관을 호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재판차왜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공작미 교섭, 통신사와 문위행의 호행, 외교교섭 임무⁵⁶⁾였다. 즉 재판차왜만으로도 각종 별차왜의 임무를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는데다가 재판차왜는 첩도(疊到)도 가능하고 유관일수도 제한이 없어 각종 차왜의 업무를 대행할만한 적임자였다. 때문에 삼사신은 각종 명목의 차왜를 만들어 파견하지 말고 재판차왜가 각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조선 측에서는 이 조항을 토대로 이후 각종 명목으로 파견되던 별차왜를 대차왜(大差倭)와 소차왜(小差倭)로 분류하고, 대차왜는 경접위관(京接慰官)이, 소차왜는 향접위관(鄕接慰官)이 접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⁵⁷⁾ 즉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대차왜라는 명칭이 1693년에 처음 보이고 있으며⁵⁸⁾, 1718년 통신사청래차왜가 도래했을 때 접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차왜 접대 전례는 1681년, 1711년 청래대차왜로 한정하면서⁵⁹⁾ 임술약조 정약 전후 시기에 대·소차왜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정된 대차왜와 소차왜 외에는 접대를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임술약조를 이행하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 사례로 1724년 연해 잠상 금단 차왜가 도래하자 조선에서는 임술약조에 의거하여 이 차왜를 규외의 차왜로 규정하고 접대하지 않았다.⁶⁰⁾ 또한 1791년에는 의병사 선문 두왜가 도래했는데 이 경우도 임술약조에 의거하여 차왜 파견을 책망하고 효유하였다.⁶¹⁾ 이렇게 규정 외 차왜는 줄어들이는 했으나 대마도 측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별도의 차왜를 파견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2) 표인영래차왜 축소 및 표민순부

조선으로 내왕하던 별차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던 漂人領來差倭는 삼사신의 연명서에서 차왜를 줄이는 일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조선 측에서는 이 차왜만 줄이더라도 접대 비용이 상당히 감해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삼사신은 “표류자의 호행은 통신사를 호행하는 차왜와 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자를 보내지 않아도 무방하다.”⁶²⁾고 하였다. 그러므로 표인영래차왜는 서계를 대관에게 순부하도록 하고, 조선에서는 접대를 兼帶送使를 접대하는 예

54)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3일.

55) ‘이혜진, 위의 논문, 『한일관계사연구』8, 1998’에서는 『변례집요』의 내용을 들어 “재판”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1681년 장계에서부터라고 하였으나, 『접왜식례』에 따르면 그보다 이른 1680년 9월부터 “재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56) 이혜진, 위의 논문, 『한일관계사연구』8, 1998; 심민정,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5, 63~64쪽.

57) 대차왜와 소차왜의 구분 및 경·향접위관 접대 규정에 대해서는, ‘심민정, 위의 박사학위논문, 2015, 54~62쪽; _____,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297~306쪽’이 참조된다.

58) 『변례집요』 권1, 「별차왜」 계유(1693) 1월.

59) 『변례집요』 권1, 「별차왜」 무술(1718) 1월.

60) 『변례집요』 권1, 「부록규외위격」 1724 6월.

61) 『정조실록』, 15년 11월 24일.

62)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3일.

에 따를 것이라 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 봉행왜인은 모든 표인영래차왜를 단절하기는 어렵고, 차왜의 경중을 가려 타 군현으로 표류하였거나 배가 부서져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왜를 파견하겠다고⁶³⁾는 뜻을 보였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표인영래차왜의 접대를 다른 소차왜 접대와는 달리 솔속 인원을 조정하고, 1특송사의 예가 아닌 세건1선송사의 예로 접대⁶⁴⁾할 것을 규정하였다. 즉 임술약조 이전에는 조선인 중 일본에 표착한 사람은 배가 완전할 경우 통사왜, 사공왜 각 1명, 금도왜 2명을 태워 보내왔다. 배가 파손된 경우에는 왜선에 태워 격왜 40명을 더 데리고 오면 관에서 도해량미 44석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약조 이후 표인영래차왜 접대는 정관1, 봉진1, 반중 3, 격왜 40명, 향접위관이 세건1선례로 접대하게 되었다.⁶⁵⁾

이후 표류로 인해 배가 파손되고 목숨을 잃은 조선인을 데리고 오는 차왜를 허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때 그 근거로 ‘임술약조’가 인용⁶⁶⁾되고 있다. 즉 1685년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환도한 것을 알리는 차왜가 도래했을 때에나, 1686년 1월 26일에는 표류민을 순부해 온 차왜가 도래했을 때 임술약조를 어기고 출래했다 하여 접대를 불허하였으며, 다례만 행하였다.⁶⁷⁾ 이후 破船殞命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지만 표차왜 중 대마도에 표착한 조선인은 연례송사나 재판차왜, 飛船 등에 순부하여 송환하였다.⁶⁸⁾

[3] 대관 인원수 축소

세 번째 조항은 대관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대관왜는 조일 양국 무역 교섭 및 결제, 각종 지급 잡물의 수령 및 재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왜관 내의 관리이다.⁶⁹⁾ 대관왜를 줄이는 이유는 왜관 내에서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폐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너무 많은 대관들이 거래에 관여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봉행왜들은 대관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⁷⁰⁾ 임술약조 이전에도 대관왜는 한 차례 인원수가 줄어 1635년 24명이던 대관왜가 1679년 20명으로 감소된 바 있다. 그러다가 임술약조 이후 1684년에는 대관을 이전의 절반인 10명으로 줄여⁷¹⁾ 약조를 이행하였다.

4. 맺음말

1682년 ‘통신사’는 초량에 새로운 왜관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국가간의 通信이라는 대표 임무 외에 신왜관을 통한 외교질서 재편이라는 부차적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 사행에서는 왜관 내 대마도인을 통제하기 위해 癸亥約條나 約條制札의 내용 결정 뿐 아니라 추가로 약조가 체결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壬戌約條”가 그것이다. 하지만 임

63)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7일.

64) 『증정교린지』 권2, 「차왜」.

65)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66) 『변례집요』 권5, 「약조」 기미(1739) 9월.

67) 『접왜식례』 「差倭接待之式」 1685년 6월; 1686년 1월.

68) 『변례집요』 권3

69)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日本), 1981.

70) 홍우재, 「동사록」 임술년(1682) 10월 27일.

71) 『증정교린지』 권2, 「차왜」.

술약조는 계해약조처럼 비에 새겨지지는 않았다. 이는 『통신사등록』에서도 드러나듯이⁷²⁾ 왜관에서 활동 규제라는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왜관이 무역의 장이라는 역할 외에 사신접대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임술약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임술약조는 왜관 내 대마도인 통제를 위한 계해약조와는 달리 조선으로 왕래하는 차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본측 외교사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마도와의 외교업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1682년 통신사는 “국가간 외교업무”라는 본연의 임무를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계해약조나 무오절목, 특히 왜관에서의 일본인 통제라는 주제에는 주목하였으나 임술약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682년 통신사행 과정에서 초량왜관 이전 후 대표적인 일본 사신인 차왜제도 재편의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임술약조를 살펴보았다.

임술약조 교섭의 가장 큰 배경은 초량으로 신왜관 이전이다.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에 대한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구역의 설정, 공간 배치 등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대체로 왜관에 거주하게 될 왜인 실무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면이 많았다.

임술약조 교섭의 또 다른 배경은 ‘표왜임송회사차왜의 소멸과 재판차왜의 생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신왜관 조성 후 일본사신이 조선으로 내도하면서 조선 측에서는 이들 사신에 대한 접대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도래 횟수가 가장 많았던 표인영래차왜, 도주고환차왜, 그리고 문위역 관호행차왜 및 公韓次知差倭 등을 포함하는 裁判差倭는 파견횟수가 상당히 많아 늘 접대에 부담이 되었다. 이 때문에 무오약조의 실제적 운용을 포함하여 차왜 및 세견선 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조를 논의하는 임무를 임술통신사가 이행하게 된 것이다.

통신사가 강정한 임술약조의 내용은 크게 3가지 조목이다. 첫째, 규정된 것 이외의 차왜는 보내지 말 것, 둘째, 표류인 영송시 별도의 차왜를 보내지 말고 대관에게 순부하게 할 것, 셋째, 양국 매매시 담당 대관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임술약조의 모든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차왜접대제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별차왜 대차왜 및 소차왜로 정리되었다. 또한 도주고환차왜(島主告還差倭)나 표인영래차왜는 임술약조가 강정된 초반기에 접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도주고환차왜와 표인영래차왜는 차후 다시 접대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외 조선 측에서 대차왜나 소차왜로 규정되지 못한 다른 차왜들은 임술약조를 이유로 접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갔다.

임술약조가 계해약조처럼 비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왜관에서의 활동 규제라는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왜관이 무역의 장이라는 역할 외에 사신접대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임술약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통신사를 비롯하여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신인 차왜와 관련된 약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17세기 말 조일외교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던 상황에서 임술약조는 통신사라는 국왕사절을 통해 양국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72) 『통신사등록』 4책, 임술(1682) 11월 30일 기록에 의하면, “임술약조는 왜관 가운데 패를 새길 일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제2주제】

무진사행에서 벌어진 일들

-유곽, 폭력사건-

다사카 마사노리(선문대)

1. 머리말
2. 본론
 - 1) 느슨한 사행
 - 1-1) 고래잡이 구경
 - 1-2) 赤間關 市中 徘徊
 - 1-3) 赤間關의 유곽
 - 1-4) 조선인-일본인 접촉
 - 2) 폭력사건
 - 2-1) 일본인이 벌인 폭력사건
 - 2-2) 조선인이 벌인 폭력사건
3. 맺음말

1. 머리말

무진사행(戊辰使行)은 무진(1748)년 6월 1일에 江戸에서 국서전명을 수행해서 무진사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나, 정묘(1747)년 11월 28일에 한양을 떠났기에 정묘사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따라 무진사행으로 칭한다. 사행 일정을 기록한 문헌으로 조선에서는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홍경해 『수사일록』이 저술되었으며,¹⁾ 일본 對馬藩에서는 121권에 이르는 『延享信使記錄』 및 이에 준한 기록물이 제작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사행이 왕래한 곳곳에서 기록물이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문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 중에 사행의 여정(旅程)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것은 松田甲(1928)²⁾이 『봉사일본시문견록』을 근거로 사행이 접대를 받은 곳과 그 지역의 영주(領主) 및 여정 등에 관해 서술한 것을 시작으로, 三宅英利(1986)³⁾가 부사선 소실(燒失) 건, 가모카리(蒲刈)에서 1명이 병사(病死)한 일, 사행 중에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이 존재한 사실, 京都에서 화란제(和蘭製) 충을 구입한 일, 일본의 재정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호의 기운이 넓어진 사행이자 동아시아사회의 안정을 상징한 사행으로 평가했다. 이어 정장식(2006)⁴⁾이 더 세밀

1) 본고에서는 『봉사일본시문견록』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홍경해 『수사일록』은 하우봉·이선아 역(『수사일록』, 보고사, 2018)를 인용했다.

2) 松田甲, 「李朝英祖時代 戊辰信使の一行」, 『日鮮史話』 제4편, 朝鮮總督府, 1928. 46-74쪽.

3)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중에서 특히 489-528쪽.

4) 정장식, 「第十章 一七四八年の通信使と日本への認識變化」, 『使行録に見る朝鮮通信使の日本觀』, 明石書

하게 무진년 통신사를 서술했다. 그의 서술은 주로 조선의 사행록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여정을 논한 연구 중에는, 회화(繪畵)·유묵(遺墨)·명승지(名勝地) 등 특정 사항을 논한 것이 있으며,⁵⁾ 국내에서는 2010년에 들어 김형태(2010)⁶⁾, 함정식·차웅석(2009,⁷⁾ 2010)⁸⁾ 그리고 구지현(2013)⁹⁾이 의원(醫員)필담집을, 이경근(2015)¹⁰⁾이 『수사일록』, 구지현(2016)¹¹⁾이 유학자들의 필담창화집, 이효원(2017)¹²⁾은 徂徠學, 한태문(2019)¹³⁾은 후쿠야마한(福山藩) 문사와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 무진사행에서 근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주도한 정한론을 읽어낸 진재교(2014)¹⁴⁾도 있다.

그러나 사행이 일본을 왕래한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위에서 소개한 부사선 소실, 가모카리(蒲刈)에서 1명이 병사(病死), 사행에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 존재한 사실, 화란제 총 구입 외에 무진사행 여정에서 일어난 일은 조명된 바가 없다. 사행이 남긴 문헌 및 문화유산을 살피고 조일 간의 문화교류의 모습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정을 함께한 사행과 일본인 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조명하는 것도 무진사행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데 필요한 작업으로 여기는 것이다.

본고는 사행의 전 여정에 걸쳐, 『봉사일본시문견록』·『수사일록』 등 사행록 및 일본의 신사기록 특히 신사부고카타(信使奉行方)과 오토모카타(御供方) 매일기 등을 비교 고찰하여,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무진사행의 진상의 일부를 밝히려고 한다. 본고도 조선통신사를 한일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보며 특히 무진사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사행으로 보는 평가와 논지를 같이 한다. 그 평화로웠던 사행에서도, 아니 평화로운 탓에, 문화와 역사를 달리한 1천 명에 가까운 조선인과 일본인이 對馬藩과 江戸를 왕래하면서 서로 부딪치며 갈등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며 평화로운 사행으로 평가 받는 무진사행의 모습을 알아보기로 한다.

店, 2006, 333-373쪽.

- 5) 李進熙, 『李朝の通信使』, 講談社, 1976, 映像文化協會編,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毎日新聞社, 1979)에 실린, 姜在彦, 「朝鮮通信使と鞆の浦」, 115-118쪽, 吉田宏志, 「朝鮮通信使の繪畵」, 150쪽, 李元植, 「朝鮮通信使の遺墨」, 183-220쪽.
- 6) 김형태, 「1748년 제10차 무진사행 의원필담의 성격 변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287-320쪽.
- 7) 함정식, 「조선통신사의 의학교류 중 일본 의가의 치험 사례 연구-『韓客治驗』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9, 조선통신사학회, 2009, 127-160쪽.
- 8) 함정식·차웅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對麗筆語』, 『韓客治驗』,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83-125쪽.
- 9) 구지현, 「1748년 조선 양의와 일본 관의와의 필담 출현과 서적담화 양상」,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369-399쪽.
- 10) 이경근, 「무진사행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 - 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화교육학회, 2015, 255-290쪽.
- 11) 구지현, 「1748년 조선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95-129쪽.
- 12) 이효원, 「通信使와 徂徠學派의 교류 양상과 그 의미 文明과 武威의 착종과 충돌,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 『한국문화』 7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9-47쪽.
- 13) 한태문, 「일본 廣島縣 향토사료에 반영된 조선후기 통신사와 福山藩 文士の 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71-102쪽.
- 14) 진재교,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지식·정보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359-392쪽.

2. 본론

1) 느슨한 사행

평화롭다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하다는 뜻이므로, 그 모습은 다툼이 없고 조용하고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별 문제 삼을 것이 없어 여러 면에서 느슨한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무진사행은 477명의 조선인과 1,000 명을 넘는 對馬藩에 속한 일본인이 함께 江戸와 對馬藩 간을 왕래한 거대한 단체 행동이다. 단체 생활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엄격한 규칙이다. 규칙은 지키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과 일본에서 서로 지키기로 한 다양한 규칙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 허락된 일탈행위와 허락 없는 일탈행위, 그리고 처벌이 따른 불법행위 등 강도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사행록과 신사기록에 기록된 느슨한 탓으로 일어난 일탈행위를 살펴본다.

1-1) 고래잡이 구경

1748년 2월 16일에 사행이 도착 예정지인 사수나(佐須奈)가 아닌 와니우라(鰐浦)에 도착하여, 對馬藩의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21일 밤에 부사선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¹⁵⁾과 상당한 분량의 예단이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다. 무진사행은 출발부터 큰 시련을 겪었다.

사행은 22일 간의 쓰시마(對馬) 후추(府中) 체류 끝에 3월 17일에 첫 기항지(寄港地) 이키(壹岐) 가쓰모토(勝本)에 도착하여, 3월 27일에 고래잡이를 구경하게 된다.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니 사행록에도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래잡이 구경을 하게 된 경위이다. 두 사행록은 나란히 對馬藩의 재판이 고래잡이 구경을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흥경해는 재판의 요청을 삼사가 허락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했다.¹⁶⁾

그런데 신사기록은 다르게 기록한다. 신사기록에는 고래잡이 구경이 이루어진 27일보다 일주일 전인 21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은 [669] 『信使奉行方參向船中毎日記』¹⁷⁾이다.

“ (이 섬에서는) 고래잡이를 한다는 것을 안 正使子共衆 및 군관들 14~5명이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 구경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삼사가 상사관을 통해 전해 왔으니 여쭙어 보고 허락해 달라고 우필을 통해 大藏에게 전달한 후, 많은 사행 일원이 배로 바다에 나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통사를 통해 만류했으니 이미 배 한 척이 고래잡이 장소에 이르렀다. 도주가 알게 될까 염려하여 처치를 또 우필을 통해 요청하며, 고래잡이를 허락한다는 大藏의 답변이 있어 재판을 통해 박침지에 전달한 것은, 고래잡이 구경이 허락되 소인원으로 하고, 또 답변이 있기 전에 바다에 나간 사람들을 질책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러자 군관 중에서 재판에게 ‘구경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전달했는데도 답변이 없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인을 때렸다. 말로 하면 좋은데 무례한 일이다.’라고 했다. 재판이 ‘허락한다는 답변을 기다려야 했는데도 막무가내 바다로 나가, 제재하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맞은 모양이다. 결국 조선 측에서 법을 어기고 벌어진 일이다. 당사자들을 꾸짖으면 오히려 일이 꼬이니 불편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전하니, ‘일을 크게 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하인을 때리는 일

15) 對馬 府中 체류 중에 부상자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부사선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16) 『봉사일본시문견록』은 3월 27일 조에 ‘裁判來謂譯官曰、願以此處人捉鯨之戲、供使行之一覽’、『수사일록』은 3월 17일 조에 ‘裁判請、使人試作拉鯨之狀以供一笑、故許之.’라고 기록. 『수사일록』은 3월 17일 다음 날짜는 4월 1일이다. 따라서 ‘裁判請、使人試作拉鯨之狀~’의 기록은 27일 이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17)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안의 숫자는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편찬 『對馬島宗家文書記錄類』의 장서번호다. 본고는 서명을 생략하고 장서번호로 표기한다. 서명은 원표지(原表紙)의 표제를 채용한다.

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다.¹⁸⁾

‘정사자공중(正使子共衆)’이란 정사 홍계희의 아들이므로 자제군관으로 사행의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된 홍경해를 비롯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키섬(壹岐島)에서 고래잡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홍경해 일단이 고래잡이 구경을 희망했고 그 뜻은 수역(首譯)을 통해 對馬藩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답변을 듣기 전에 바다로 나갔고, 對馬藩의 제재를 받은 과정에서 약간의 폭력이 행사되었다. 누가 어떤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나, 일본인이 조선 측 사람을 때린(擲キ) 모양이다. 하지만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본인의 폭력 행사도 불문에 부쳐졌다.

고래잡이 구경이, 사행록에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사기록에는 사행이 희망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신사기록의 고래잡이 구경을 한 당일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사가 발 길이 묶여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제 성모궁 위쪽 산에 외출을 원하는 말을 수역 박상순, 현덕연을 통해 재판 시마오 하치자에몽(嶋雄八左衛門)에 전달했다. 이에 ‘선례(先例)가 없고(對馬藩가 아닌) 타 영토이기에 가볍게 외출해서는 안 되며, 도주도 이곳을 왕래할 때 숙소 외에 외출할 일이 없고 조선과 달리 일본의 법이니 삼가도록’ 수역에게 답했다. 그러나 수역이 난색을 표하니 재판 두 사람이 의논하여 부교(奉行) 히라타 나오에몽(平田直右衛門)을 통해 오토모카타(御供方) 스기무라 다이조(杉村大藏)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삼사의 심기가 불편한데 까다롭게 대하면 좋지 않으며 선례가 없으나 요청대로 승낙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도 타 영토이니 고치소카타(御馳走方)에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으므로, 재판 두 사람이 수역에게 ‘삼사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 도주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타 영토이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부득이하게 삼사께서 바라신 대로 해 드리기로 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행차하시면 된다.’고 하는 말을 전달했다. 그러자 삼사로부터는 ‘우리의 기분을 풀기 위해 받아들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생략)’

“삼사께서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수역을 통해 재판에게 ‘고래잡이 배(鯨船)가 보인다. 지장이 없다면 고래를 잡는 것을 구경하기 원한다.’는 말을 전달했다. 통사를 통해 奉行에게 보고하니 오토모카타(御供方)에 여쭙게 되어, 별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면 고치소카타(御馳走方)에 고래잡이 구경을 할 수 있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고치소카타도 위로가 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며 조속히 고래잡이 배 4 척을 시켜 고래잡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¹⁹⁾

18) [669], 「信使奉行方參向船中毎日記」, ‘鯨を突候段, 被承之正使子共衆, 其外軍官十四五人, 小船に見物ニ罷越度旨, 三使衆ら上々官を以被申聞候付, 被相伺, 御免可被仰付哉之旨, 大藏方江御佑筆を以申遣候跡, 朝鮮人大勢小船ニ取乗り漕出候段, 申聞候付, 通詞下知役并通詞を以差留候得共, はや一艘ハ鯨場江参り候由ニ付, 御前ら御見咎可被遊候間, 執成被置候様ニ又々御佑筆を以申遣, 被差免候段, 大藏ら返答有之候間, 裁判兩人を以朴僉知江申達候ハ, 鯨見物之儀, 被申出相伺候處, 被差免與之御事候間, 小勢ニ而可被罷越候, 又此方返答不申達中ニ押而罷越候人有之候間, 此儀者追而叱度申達ニ而可有之旨申達置候後, 軍官之内ら裁判兩人江申聞候者, 見物ニ可罷出旨申達候得共, 返答及延引候故, 小船ニ乗り可罷出といたし候得者, 下人を擲キ候人在之候, 言を以可被申聞處, 不禮之仕形候由相届候付, 裁判ら申達候者, 此方ら被差免候與之返答茂不被承, 押而被罷出與被致候故, 差留候而も聞付無之候間, 左様之儀可有之候, 畢竟其方ら法を被破候付, ケ様之儀致出来候, 此儀叱度被申候ハハ却而事六ケ敷成り, 其方之難儀ニ及可申候由申置候處, 事立申入候事ニ而ハ無之, 下人を擲候儀, 以來左様無之様申付置呉候様申聞.’

19) [669], ‘三使衆御滯船ニ而御氣鬱被成候間, 昨日聖母上ハ手山ニ御越被成度候段, 上々官朴僉知, 玄僉知, 裁判八左衛門江申聞候付, 返答申達候者, 先例終ニ無之儀與申, 殊ニ他領ニ候故, 輕々敷御越被成候而ハ如何敷, 朝鮮國之風儀ハ不存候得共, 日本ニ而者大人左様之儀無之事ニ候, 既ニ太守毎年爰元往還之節, 茶屋ら外ニ被罷出候儀無之候間, 日本之時體委細被申上候ハハ, 是非與者有之間敷旨, 上々官江縷々申達候處, 御留り被成候様, 彼人共ら申上候而者首尾不宜候間, 先此段申上呉候様ニと難儀之體ニ而相頼候付, 八左衛門, 六郎右衛門申談候上, 直右衛門ら大藏方江及相談候處, 氣鬱之上被申聞候儀を申留候ハハ外之事ニ付異儀かましく有之候而者如何敷, 例者無之候得共, 彼方之望ニ被任度旨, 達御聞伺之通被仰出候段, 大藏方ら被申聞, 尤他領之儀故, 御馳走方承合候處, 彌不差支旨, 御馳走人園田十左衛門ら申出候ニ付, 裁判兩人上々官江申達候者, 此節三使衆御氣鬱之段, 殿様御氣毒ニ被遊, 他領之儀故, 御遠慮ニ思召候得共, 不得已被任思召候間, 御勝手次第御越被成候様ニと申達候處, 追付三使衆ら我々氣鬱之段御聞分被下, 忝存候與之儀故, 其段達御聞置候.(생략)’

조선도 일본도 선례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선례가 없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해 발이 묶이는 일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여행 길 이다. 날씨로 발까지 묶이면 일행의 마음이 더욱 더 고달픈 것이다. 이키섬(壹岐島)는 히라토한(平戸藩)의 영토이며 對馬藩의 영토가 아니다. 江戸시대에 하나의 藩은 하나의 작은 국가처럼 기능했다. 藩의 조직, 인사, 재정 및 징세가 엄격히 개별로 운영 되었다. 그래서 참근교대(參勤交代)로 對馬藩主가 이곳을 왕래 시에도 정해진 곳(茶屋) 외의 외출은 삼간다. 그러한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며 숙소에 머물도록 설득하나 수역들은 이에 난색을 표한다. 奉行을 통해 여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토모카타에게까지 보고를 올려 외출 허락을 얻으려고 한다. 이키섬의 영주(領主)의 가신(家臣)으로 가쓰모토(勝本)에 서의 사행 접대를 담당하는 소노다 주자에몬(園田十左衛門)에 허락을 받아 삼사는 산에 오르게 되었고, 산에 오른 후에 고래잡이 배(鯨船)가 보이니 고래잡이 구경을 할 수 있기를 삼사 측이 재판에게 또 요청했고, 접대역(接對役) 소노다(園田)의 지시로 고래잡이 시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삼사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이 전달 된 것도 기록하고 있다.

신사기록에서는 고래잡이 구경이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결론 낼 필요는 없다. 양쪽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면 어떨까. 조선은 일본의 이른바 막번체제(幕藩體制)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홍경해를 비롯한 군관들이 일본에 대한 호기심을 즉흥적으로 실천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3월 21일에는 폭력사건이 발생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1일에 벌어진 고래잡이 구경은 허락 없이 저지른 일탈행위라고 한다면, 27일의 고래잡이 구경은 허락을 받은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은 奉行方에 만 있고 오토모카타(御供方) 매일기에는 없다. 對馬藩도 그다지 큰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 赤間關 市中 徘徊

무진사행의 긴장감의 희박함은 4월 5일에 벌어진 아카마가세키(赤間關)²⁰⁾ 시중 배회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카마가세키는 조선 후기에 江戸까지 다녀간 11회의 사행 모두가 들린 기항지이자, 그들이 일본 본토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었다. 무진사행은 4월 4일 오후 2시쯤에 아카마가세키에 도착했다. 육지에 올라 관사에 입소한 삼사에게 초슈한(長州藩) 번주 모우리 무네히로(毛利宗廣)의 가로(家老) 시시도 이즈모(完戸出雲)가 찾아와 번주를 대신해서 인사를 올렸다.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다. 사행 일행이 숙소에서 對馬藩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외출하는 허락 없이 벌인 일탈행위이다. 홍경해는 시중을 돌아다닌 자신의 일탈행위를 대범하게도 사행록에 남겼다. 『수사일록』 4월 5일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술관과 서기가 와서 그 관사의 승경에 대해 자랑하기에 내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三使衆山江御揚遠見之内、裁判江上々官を以被仰聞候者、鯨船相見江候、不苦候ハハ鯨ヲ突候仕形御見物被成度御望之趣、申聞候付、通詞下知役を以、直右衛門方江申遣候處、直右衛門ち大藏方江右之段申遣被相伺候處、別而差支間敷候間、彼方さへ差支無之候ハハ御馳走方江申達御見物在之候様申来候付、御馳走方江申通シ候處、御慰ニさへ相成候ハハ無此上茂儀ニ御座候間、早々可申付之旨被申聞、早速鯨船四艘被差出、鯨突之仕形通リ仕也.”

20) 1902년에 현재의 시모노세키(下關)로 명칭이 바뀌었다.

가 보았다. 관사 문을 나와 서쪽 거리를 향해 갔는데 통행하는 거리 좌우에 시전(市廛)이 늘어서 있어서 마치 京城 같았다. (중략) 제술 관소는 아미다자사(阿彌陀寺)인데 지난번 사행 때 많은 숙소를 아미다자사에 마련하였다. 절은 매우 웅장하였으며 문의 처마에는 용과 봉황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바다에 임해 해협을 굽어보니, 백, 천 개의 돛과 닻이 뿔뿔이 눈 아래 펼쳐졌다. 각도(閣道)를 따라가니 그 뒤로 천 줄기 푸른 대나무 몇 그루와 소철(蘇鐵)이 있었는데 맑고 절묘함이 기이하고 예스러우며, 푸르른 빛이 비할 바 없이 뛰어났다. 정결한 정원의 그윽한 풍취가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갈 마음을 잊게 하였다. 오후에 지름길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잡으며 기어올라 느린 걸음으로 돌아왔다. 아미다자사에서 관소까지의 거리는 몇 마장(馬場) 쯤 되었다.²¹⁾

제술관은 박경행, 서기는 누군지 이름까지 서술하지 않았으나, 제술관과 함께 정사를 모시는 입장에 있는 서기는 이봉환이다. 박경행과 이봉환의 관사는 아미다자사이며 홍경해는 인조지사(引接寺)에 머물렀다. 관사 문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나온 것을 보니 아카마가세키에서는 관사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경해는 인조지사에서 서쪽으로 나가 시중을 구경했다. 그곳은 아카마가세키의 중심부이며, 그 모습은 경성과 같다고 했다. 아카마가세키는 기타마에부네(北前船)의 항로 중, 중요 경유지로 변창했던 곳인데 경성과 같다고 하니, 그 번성한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다. 홍경해는 책방과 벼루를 제작하는 집 등을 구경하면서 시중을 활보했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인조지사를 지나 제술관의 관소 아미다자사까지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물건을 운반하는 수많은 배가 떠있는 광경을 보았다. 초목과 정원 모습에 매료되어 돌아갈 마음을 잊었다고도 했다. 홍경해 일행의 이탈행위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지사에서 동쪽에 위치한 아미다자사까지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하지만, 먼저 아미다자사와 반대 방향인 서쪽을 향했고, 인조지사와 아미다자사를 왕복했기에 시중을 활보한 시간은 2~3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의 부교카타(奉行方) 매일기를 보면, 초슈한(長州藩) 번주가 술과 음식을 보낸 기록, 제술관과 창화한 초슈한의 문인들의 명단, 삼사와 對馬藩 간에 주고받은 물품 등이 기록되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부교카타(奉行方) 관원 및 고시소에(興添)의 오카치(御徒士)와 통사(通詞, 삼사의 가마를 드는 인부와 가마에 붙어서 다니는 통사)에게 ‘삼사는 물론 아래 사람까지 유홍소를 배회하지 않도록’²²⁾ 지시가 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시중 배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아침에 아무 통보 없이 삼사가 발포 소리와 함께 외출하여 중하관의 숙소 인조지사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외출한 것을 추궁하자 타고 온 배를 살피기 위해서여서 일을 크게 버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²³⁾ 이 일은 중대해서 소시하이(惣支配) 스기무라 다이조(杉村大藏)가 직접 삼사 관사를 찾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오토모카타에도 보고가 되었고 소시하이 스기무라 다이조가 직접 삼사와의 면담을 가진 허락 받지 않은 이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4월 8일 조에도 아카마가세키에서의 일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아카마가세키에서 일행을 접대하는 관원 이즈모(出雲)가 말을 타고 순회하는데, 홍경해와 함께 있던 한 소통사가 하마(下

21) 홍경해, 하우봉 외 번역, 『수사일록』, 보고서, 2018, 87-88쪽, ‘製述書記來訖其館舍之勝, 餘聞之, 忻然即携手同往由館門, 而出向西街, 而行通街, 左右列市廛, 恰似京城, (중략) 製述館所即阿彌陀寺, 前日使行多館此寺, 寺甚宏, 傑門楣刻龍鳳狀俯臨海門百千帆檣旗, 在眼低由閣道, 而後千莖綠竹數本蘇鐵清絕奇古翠壁斗絕庭除精潔幽趣能使人忘故, 午後由捷徑舉援松竹緩步, 而故寺距館所爲數馬場許.’ 539쪽.

22) [669], ‘主人ハ勿論下々至迄遊興所江徘徊不仕様’

23) [669], ‘今朝於客館ニ三使俄ニ鉄砲を放シ出興暫ク有之, 直ニ大道通リ中官下官宿引接寺江被罷越, 於彼方遠見被致追付帰館有之候付, 上々官招呼如何様之詔ニ而此方江茂御届も無之御出館候哉與相尋候, 乗り船江為被見被罷越候故前広御届被申候而ハ事立候故不被申出候旨申候.’

馬)하라고 하니 이즈모(出雲)가 하마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시도는 하마했으나 일행은 인사도 없이 지나가니 시시도가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다.²⁴⁾

시중 배회 사건을 각각 다르게 묘사했다. 『수사일록』은 흥경해 개인의 이국 체험을 거리의 모습과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면, 奉行方 매일기는 삼사를 비롯한 일행 전체가 對馬藩의 허락 없이 시중을 돌아다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카마가세키의 접대역을 맡은 完戶가 직접 조선인의 무례한 모습에 화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對馬藩 안에서 비밀에 부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사건의 기록에 앞서, 對馬藩이 삼사를 모시는 부교카타(奉行方) 소속의 관원들에게 사행의 일행이 ‘유흥소’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방책을 세운 상황이었음을 기록한 것은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막부의 책임 추궁에 대비한 일로 볼 수 있다.

1-3) 赤間關의 유곽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奉行方 관원들에게 사행의 일행이 ‘유흥소’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이다. ‘여기서 江戸까지 각지에 유흥소가 있으니 더욱 더 단속하라.’는 것이다. 유흥소란 유녀가 있고 술과 유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른바 유곽(遊廓)이다. 이곳 아카마가세키는 일본의 쌀 등의 물품교역의 큰 경유지이자 부(富)가 모여 소비되는 곳이므로, 현재는 지방의 소규모 거리를 형성할 뿐이지만, 당시에는 江戸, 大坂, 京都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유곽을 형성하고 있었다.

渡辺憲司(1983)²⁵⁾는 ‘이곳이 니시카이도(西海道)의 요소로서 번영한 항구이며, 항구에 빠질 수 없는 유녀가 존재했던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된다.’²⁶⁾라고 하여, 1678년에 제작된 『色道大鏡』에 기록된 아게야(揚屋)의 호수를 인용하면서, ‘大坂(瓢箪町) 35호, 下關(稻荷町) 34호, 京(島原) 24호, 江戸(三谷) 14호, 奈良(木辻町) 11호, 大津(柴屋町) 7호, 伏見(鐘木町) 5호이며, 당시 아카마가세키의 아게야가 삼도(三都)와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것을 지적한 바 있다.²⁷⁾ 井原西鶴 『好色一代男』에도 22살의 주인공 요노스케(世之介)가 지방을 방랑하면서 시키도(色道)를 추구하여 시모노세키(下關=아카마가세키) 이나리마치(稻荷町)에서 유녀들과 노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²⁸⁾

아카마가세키 이나리마치는 현재 ‘舊赤間關稻荷町跡’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는데, 이곳에서 흥경해가 머물렀던 인조지사까지 겨우 300m 밖에 되지 않는다. 인조지사에서 유곽의 모습이 보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奉行方 매일기에는 삼사들이 중하관의 관사인 인조지사까지 와서 ‘멀리 바라보았다(遠見)’라고만 기록한다. 흥경해는 거리의 모습만 기록했다. 단, ‘초목과 정원 모습에 매료되어 돌아갈 마음을 잊었다.’는 묘사가 있다. 그리고 다음 날 6일에 기록은 없다. 『수사일록』은 기록이 없는 날도 있으니, 굳이 상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나, 시간도 잊고 관소 밖에 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심사 관사에 직접 찾아간 소시하이 스키무라 다이조가 ‘아직 국서를 막부에 전달하지 않는데

24) [669], ‘正使子共赤間關市中徘徊之節小通事相附居, 宍戸出雲馬上ニ而被行逢候節, 下馬有之候様小通事申達, 下馬被致候得共正使子共衆ら時宜無之, 出雲立腹被致候由,’

25) 渡辺憲司, 「下關遊女かぶき-女かぶき禁止令と地方遊里-」, 『日本文學研究』19号, 梅光女學院大學日本文學會, 1983, 107-116쪽.

26) 渡辺憲司, 108쪽.

27) 渡辺憲司, 109-110쪽.

28) 暉峻康隆 東明雅 교주, 『井原西鶴①』, 小學館, 1999. 82-83쪽.

시중을 다닌다면 가볍게 보인다. 잘못하면 일본에서는 칼싸움이 벌어진다. 일본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될 일이 있어도 일본인의 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²⁹⁾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삼사는 ‘말씀 듣고 놀랍다.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다면 앞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³⁰⁾고 답했다. 시중을 배회한 조선인은 30명 정도이며, 민가에 들리기도 하고, 왕래의 지장이 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사행록 및 신사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사행이 들리는 곳곳에 유곽이 존재한다. 앞에서 나온 삼도 외에 가미노세키(上關)(참향 4월 8-9일, 하향 7월 13일), 다다노우미(忠海)(참향 4월 14일), 도모노우라(鞆の浦)(참향 15일, 하향 7월 10일), 무로쓰(室津)(참향 19일, 하향 7월 8일), 오쓰(大津)(참향 5월 3일)에도 유곽이 존재했고, 하향 길 7월 15일에 다시 아카마가세키에서 머물게 된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사행 및 對馬藩 일행인 만큼, 양쪽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1-4) 조선인-일본인 접촉

아카마가세키에서의 사행 일행의 시중 배회는 사행에 있어서는 광관 기분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었을지 모르나, 안전하고 무사히 여정을 인도해야 하는 對馬藩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이자 곤욕스러운 이탈행위였다. 사행은 對馬藩 지휘 하에 통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통제를 벗어나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접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먼저, 아카마가세키 바로 다음 관사가 마련된 가미노세키에서 또 시중을 배회하는 일이 있었다. 역시 유곽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밤늦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669] 4월 8일 조에는, ‘그리고 또 조선인이 이곳에서 시중 멀리 외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나오에몽(直右衛門)가 밤이 되어 사행의 관사를 찾아가 수역들을 불렀는데, 박상순과 현덕연은 배에 있어 홍성구를 불러서 이 건에 관해 엄히 전달했다.’³¹⁾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삼사 측의 반응은 정사가 연이어 몸이 아픈 상황이었어서, 이를 후인 10일 가마가리(蒲刈)에 도착 후에 정사의 거실에서 삼사의 요청으로 나오에몽 와의 면담에서, 현덕연을 통해, 말단에 있는 자들의 실례였으며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잘 다스리겠다는 말로 마무리 된 것을 알 수 있다.³²⁾

[669] 12일 조에는 가미노세키에서 일어난 시중 배회에 관해 좀 더 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밤늦은 시간에 시중을 배회하여 ‘朝鮮人日本人入交’했을 뿐만 아니라 ‘婦人狎茂入交’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인이 무사가 허리에 차는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무기를 조선에 주는 것은 막부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밀무역인 ‘잠상(潛商)’에 해당되며 엄한 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 것이다. 對馬藩도 단순히 사행 일행의 이탈 행위 차원이 아닌, 사행을 단속하는 요코메(横目)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신(家臣)들을 엄하게 지도하는 데에 이르렀다.³³⁾ 사행 일행 중에서 시중을 배회하는 일이 생긴 원인이 통행을 단

29) [669], ‘未國書公義ニ不被差上前, 市中御通興被成候而ハ輕々敷相聞, 非法之仕形於有之ハ日本國風ニ而ハ不差置及刀場候, 法外之儀有之候ハ日本人ち可致打擲候間, 其節異難被申間敷候.’

30) [669], ‘只今被仰聞驚入, 不作法之人有之候ハ向後敷被申付ニ而可有御座候.’

31) [669], ‘將又朝鮮人爰許市中遠方江罷越不埒之儀有之候由相聞候付, 直右衛門夜ニ入客館江罷出, 上々官三人共召出候得共, 朴僉知玄僉知ハ船ニ罷在, 洪僉知罷出候付, 右之段敷申達.’

32) [669], ‘此方ら茂堅不禮成儀無之様ニ申付置候得共, 下々之儀故難届候, 猶又敷可申付置候, 末々之者小事を仕出シ候而茂事ニ依り, 及大事候儀ニ候間, 順便ニ有之度與之趣被申間候間, 直右衛門承答委細被仰聞候趣被入御念儀承知仕候.’

33) [669], ‘就中於上關ニ者, 甚不行規ニ有之朝鮮人夜更候迄市中令徘徊, 其上婦人狎茂入交候由, 將亦朝鮮船江所之者乘居候由, 就夫候而者所之町人脇差を指居候, 左候ハ品ニ武器を以潛商之恐有之候, 通詞下知役之

속하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으로 보고 안타까워하는 정도로 그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³⁴⁾

對馬藩이 사행의 관사 외로 외출하는 일을 엄하게 단속하기로 한 후에 사행 중의 일부가 시중을 배회한 일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사행이 江戸의 관사 히가시 흥강지사(東本願寺)에 도착하자마자, 통제를 벗어난 조선인-일본인 접촉 두 번째 일이 발생했다. 부교카타 매일기 [677] 5월 21일에 삼사를 비롯한 사행 일행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관사 정문 앞 상점에서 사행 일행 중의 일부가 떡과 술을 구매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일은 가미오 이치자에몽(神尾市左衛門)로부터 對馬藩에 알려 왔다. 혼잡한 틈을 탄 일탈행위이다.³⁵⁾ 이 일을 기록한 오토모 카타 매일기 [665]에는 이 사건의 기록과 함께 사행 일행의 중하관들이 일본 돈(錢)을 소지하여 여정 중에도 곳곳에서 술 등을 조달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³⁶⁾ 그 구체적 사례가 [677] 5월 22일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나가와(品川)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술을 사고 일본 돈을 건넸다고 하는데, 조선인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본인과 비밀리에 상거래를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이에 수역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놀랍다. 앞으로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³⁷⁾는 것이다. 수역이 세 명 중의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일본 돈을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는 말로 유야무야가 되었다.

사행 일행과 일본인 사이의 상거래는 ‘잠상(潛商)’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행 중에서도 ‘下々’의 사람들이 일본 돈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어떤 방법으로 ‘下々’의 사람들이 일본 돈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밝혀진 일이 없다.

2) 폭력사건

국서전명을 앞둔 사행이 고래잡이 구경을 했고, 해로 숙박지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려 머문 두 곳에서 관사를 무단 외출하여 유곽이 있는 시중을 배회했고, ‘잠상’이 의심되는 사행과 일본인이 만난 일 등은 조선의 조정을 대표하여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는 사행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다. 조정을 대표하여 일본에 조선의 신진문화를 전수하려는 기개를 찾아볼 수 없는 느슨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느슨한 분위기에서 벌어진 일 중에 폭력사건도 있다. 사행록에 기록된 것은 두 건이며, 신사 기록에는 네 건의 폭력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폭력을 행사한 기록을 가해자가 일본인인 경우와 조선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사건과 그 결과를 정리한다.

조선후기의 사행 중에 폭력사건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이른바 토진고로시(唐人殺し), 즉 조임을 정사로 파견된 제11차 계미사행 때의 최천종 살해 사건일 것이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일본인 통사가 사행 중의 중관에 속한 도훈도(都訓導)를 살해한 살해사건이었다. 무진사행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儀者三使衆ニ隨ヒ揚陸可致候得共、横目之儀ハ始終船ニ罷有筈ニ候處、不相抱者船江可被之乗様無之、剩他所之者彌可禁儀ニ候、右之通不埒有之段、達御聞ニ御下知不相屈ニ相成、御憂慮之御事ニ候、横目之者急度相叱リ、以來不埒之儀無之様ニ可申渡候.’

34) [669], ‘畢竟此方之役人少数ニ付、難及御手何共氣毒ニ存候.’

35) [677], 「奉行方 延享信使記録 ハ 江戸在留中毎日記」, ‘混雜之上ら不埒仕ニ而可有御座候.’

36) [665], 「江戸御在留中毎日記 三冊之内 上」, ‘下々日本錢を以所々ニ而致調物、道中ニ而者酒杯調給候由相聞候’

37) [677], ‘品川之駅ニ而女を相手ニ酒を給、錢等拂候由相聞候、不行規者勿論之事、朝鮮人錢を儲ケ不申筈ニ候處、如何様内々日本人と商賣致候事と相聞候間急度返答承度旨申達候事、答、此儀初而承之驚入候、以來曾而不行規無之様相示し可申候.’

2-1) 일본인이 벌인 폭력사건

무진사행에서 최초로 발생한 폭력행사는 1-1) 고래잡이 구경에서 본 바와 같이 3월 21일에 가쓰모토(勝本)에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일본인이며 피해자는 고래잡이 구경에 나선 ‘下人’이다. ‘下人’이란 중관 하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정할 수 없다. 사행 측은 對馬藩의 허락 없이 벌인 일이기도 하니 일본 측의 책임 추궁 없이 지나갔다.

두 번째 폭력행사 가해자도 일본인이었다. 5월 3일 오전 9시 40분 혹은 11시 40분³⁸⁾에 京都를 출발(出興)한 삼사는 오후 1시를 지나서³⁹⁾ 오쓰(大津)에 도착했다. 『봉사일본시문견록』 5월 3일에 ‘행중(行中)의 건량관(乾糧官) 마른 식량을 맡은 관원’ 등이 참(站)마다 먼저 가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번에 오쓰(大津)에 들어갈 때에 對馬藩의 금도들이 번주가 묵는 곳(本陣)의 문 앞이라 하여 길을 막고 말 타고 지나는 것을 금하므로, 건량관 등이 따지고 다투었으나 이기지 못하고서, 말에서 내려서 지나갔다고 한다. 왜국에서 본디 범마(犯馬)의 금령이 없는데, 금도들이 우리나라를 본뜨려고 중간에서 이런 짓을 하니, 아주 교악(巧惡)하므로, 수역을 보내어 對馬藩主 소 요시유키(宗義如)에게 말해서,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⁴⁰⁾고 기록되고 있다. 건량관⁴¹⁾이 對馬藩 사람과 따지고 다투는 것을 ‘쟁힐(爭詰)’이라고 표현했다. 신사기록 부교카타 매일기 [676]에는 슈쓰바카타태다이(出馬方手代) 나카하라 다다고로(中原只五郎)가 ‘번주 요시유키 숙소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려는 소동을 말에서 끌어내려(引下シ) 때렸다(打擲被致候).’⁴²⁾는 기록이 있다.⁴³⁾

그런데 『出馬帳』⁴⁴⁾를 보면 사실은 좀 더 복잡했다. 本陣 앞이라 이미 도착해서 本陣에 있던 스즈키 이치노신(鈴木市之進)에게 다다고로(只五郎) 등이 지시를 받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다다고로(只五郎)가 말에서 끌어내린 소동은 국서를 모시는(國書附) 소동이 아니고 정사를 모시는 소동이었다. 國書附는 어떤 사람 앞에서 하마하지 않는 것이 조선의 국법이라는 사행 측 설득에 이치노신(市之進)도 國書附는 本陣 앞을 하마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허용했다. 國書附 소동은 하마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모습을 본 정사를 모시는(正使附) 소동이 하마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것을 본 다다고로는 또 이치노신의 지시를 구하면서 本陣에 있던 아시가루(足輕) 3명과 함께 현장에 나오게 되어 이 足輕 3명이 소동을 말에서 끌어내리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正使附 소동 뒤에서 군관 두 명이 또 하마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한 것이다.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구치토리(口取)를 군관이 채찍이로 찌르게 되어 통사(通詞)가 소통사(小通事)에게 ‘일본인을 치면 칼로 벨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해 뒤를 이은 모든 사행이 하마하지 않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654] 出馬方の 기록이다. 사건 당사자인 出馬方の 기록이 奉行方 및 御供方 매일기보다 상세하고 진실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역시 奉行方 및 御供方 매일기만으로는 실제 모습을 정확

38) [676] 「參向道中毎日記」는 午上刻(오전 11시 40분), [664] 「御參向京都御發駕ち江戸御着迄御道中毎日記」는 巳中刻(오전 9시 40분)으로 기록.

39) [676]는 未刻(오후 1~3시), [664]는 未中刻(오후 1시 40분경)으로 기록.

40)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41) 양홍숙, 「조선후기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의 구성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111-151쪽 중 137쪽에 따르면 무진사행의 건량관은 상통사 정도행, 압물통사 최학령, 최수인, 황후성.

42) [676], 「御旅館之前乗通り候とて小童を引下シ打擲被致候」.

43) 5월 3일의 하마(下馬) 사건에 관해서는 横山恭子が 박사논문 「朝鮮通信使迎送體制の研究」 (2014), 78-81쪽에 [654] 「出馬帳」을 인용하여 상세히 논한 바 있다.

44) 「出馬帳」,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번호 654.

히 알 수 없다.⁴⁵⁾

그 결과 사행에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가 된 일본인은 ‘메시하나치(召放)’ 처치가 되었다. 「수사일록」은 다음 날인 4일에 이 사건을 기록하며, ‘적용된 형률의 이름에 대해 물었더니, “召放”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감해준 벌이라고 한다. 일본에는 본래 태형(笞刑)에 처하는 법이 없어서 중죄인은 참형에 처하고 조금 중한 자는 “召放”하여 다시는 임용하지 않으며, 아들 손자 까지도 관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 말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⁴⁶⁾라고 기록했다. 죽음보다 명예가 더럽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일본 무사사회에는 ‘召放’는 절복(切腹)보다 무거운 벌로 여겨졌다. 절복은 죽음으로 용서받는다. 처벌을 받는 자는 목숨은 잃지만 자손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召放’는 자손도 가문을 이을 수 없게 되어 명예회복의 길이 어려워진다. 가신으로서의 더 불명예스럽고 무거운 벌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召放’는 통상적인 ‘召放’가 아니었다. 가해자는 무진사행을 호행하고 江戸까지 왕래하는 임무로 부름을 받은 입장이며 이 경우의 ‘召放’는 그 임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對馬藩에서 녹을 받아 번사(藩士)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어 있다.

오토모카타 매일기 [664]에는 5월 4일 조에 다다고로(只五郎) 그리고 함께 있던 하리야마 구리에몽(平山栗右衛門)에게 ‘召放’ 처분이 내려진 기록되어 있다. 『對州ニ而諸役付并誓旨扣』⁴⁷⁾를 보면 두 사람은 出馬方 데다이(手代)로 임용되었고 모리야마(守山)에서 귀국 처치된 기록이 있다. 『信使集書 御留守御國』⁴⁸⁾ 6월 22일 조에는 두 사람이 쓰시마섬(對馬島)에 돌아온 기록이 있다. 그리고 『信使以後御國集書』⁴⁹⁾ 사행이 조선에 귀국 후인 8월 4일에 사행 호행의 성공 및 2년 전에 막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성취한 것(御大願)을 축하하여 노(能)를 즐기면서 번주 宗義如가 보상을 하사한 기록 중에 다다고로의 이름이 나오고 은 1냥을 하사 받은 기록이 있어, ‘召放’는 사행 호행에서 제외된 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하다고 예측한 홍경해는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이다.

사행록 및 신사기록에 일본인이 가해한 폭력행사 기록은 이 두 건 외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있던 것으로 추측 되는 기록이 있다. 귀로 오사카에서의 기록이다. 『御下向京都大坂在留中信使奉行方毎日記』 7월 1일에 삼사가 관사를 찾아온 요시유키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역관의 통역이 불안해 문서로 요시유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그 문서에 ‘기타 여러 곳에서 사행 중의 일원을 타척하고나 칼을 칼집에서 뽑(고 위협하)는 무례한 행동이 한 번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주객 관계에서 이런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 문제 삼지 않고 왔다.’⁵⁰⁾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날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요시유키에게 직접 전한 것은 2~3일 전에 京都에서 하마찰(下馬札)이 요시유키가 머무는 곳 앞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행을 일본 측이 제재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요시유키는 이에 하마찰이 세워진 것은 막부가 한 일

45) 기존의 연구가 사행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방대한 신사기록은 주로 부교카타 및 오토모카타 매일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실체 모습은 그 외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은 箕輪吉次(「壬戌信使記録の虚と實」, 『일본학연구』 제40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143-176쪽. 「壬戌年 信使記録의 集書」, 『한일관계사연구』 제50집, 한일관계사학회, 2015, 123-174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46) 홍경해, 132쪽.

47) 「對州ニ而諸役付并誓旨扣」,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번호 652.

48) 「信使集書 御留守御國」,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번호 686.

49) 「信使以後御國集書」, 慶應義塾大學 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8, ゆまに書房, 1999.

50) 「御下向京都大坂在留中信使奉行方毎日記」, 慶應義塾大學 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7, ゆまに書房, 1999, ‘其外所々ら此方之者を打擲いたし或は刀を抜、彼は無禮之仕形一度ならず驚入候。乍然主客之間ケ様の儀つと／＼ニハ難申上、其向ニ仕置候。’

이고 무례를 저지른 일이 있던 것은 몰랐다면, 조사해서 문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사도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은 없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중하관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직접 폭력을 당한 사람은 중관에 속하는 소동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행사가 아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조선의 국서가 노상에서 체류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국서에 대해 치욕을 준 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폭력행사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고 국서의 존의(尊意)에 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召放’라고 하는 중벌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고식지계(姑息之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일본인이 사행에게 힘을 쓰거나 칼로 위협한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신사 측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조선인이 벌인 폭력사건

세 번째 폭력행사는 오쓰(大津)에서의 하마(下馬)를 둘러싼 사건 바로 3일 후인 5월 6일에 일어났는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군관 한 사람이며 당한 사람은 기슈한(紀州藩)의 슈쓰바 구치토리(出馬口取)였다. 부교카타 매일기 [676] 5월 6일 조는 아침에 히코네(彦根)를 떠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닌 말에 올라타려는 군관을 제재하다가 군관이 채찍으로 때렸다는 것을 기록한다. 10일 조에는 ‘재판이 수역에게 처벌하기를 청했는데 삼사 측은 일본인을 때린 군관이 없다고 한다. 이대로는 수습이 안 된다고 설득을 거듭했더니, 일본인을 때린 군관은 없으나 말을 채찍으로 때린 군관이 있다고 답한다. 결국은 타척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채, 紀州藩에서도 없던 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더 이상 의논하지 않았다.’⁵¹⁾고 기록하고 있다. 對馬藩도 사행도 폭력행사 정도는 간혹 있는 일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江戸를 떠난 다음 날 6월 14일, 첫 숙박지 시나가와(品川)를 출발한 후 바로 다마가와(多摩川) 하구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여정이 있었다. 혼잡한 상황에서 對馬藩의 간조야크(勘定役)이자 그곳의 책임자(川越奉行)인 히구치 주로자에몽(樋口十郎左衛門)이 목격했다며, 통사 후쿠야마 덴고로(福山傳五郎)가 주로자에문(十郎左衛門)의 말을 통역하는 중에 군관보다 하급인 조선인이 부채로 덴고로의 팔을 가격했다는 것이다.⁵²⁾ 군관보다 하급 조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된 바 없다. 일본 측은 수역에게 중히 장형(杖刑)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했으나 삼사 측이 특단의 처치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덴고로를 가격한 조선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어떤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1) [676], ‘一行中懲り候程ニ罪を被仰付候得, 其次第を以紀州様御出馬役江此方より斷可申達與之儀, 裁判上々官を以申込候處, 彼方ニ而吟味有之候得共軍官中日本人を致打擲候者無之段申出候付, 其向ニ而者難相濟由段々申論置候處, 今日上々官罷出相申聞候ハ, 致打擲候與申者者無之候得共鞭を以馬を打候與申者有之候付, 左候ハ此者を叱紀州様へ之御斷且ハ一行之戒と存, 三使衆面前ニ罷出候儀差控候得共嚴數被申付一兩日内可被差免様子ニ無之候間, 紀州様方者何分宜様ニ御取成被下候得と裁判江申聞, 尤口取打擲ニ違候儀其後得と聞合候處打擲実否ハ不相知候得共, 彼方ニ者聊打擲ニ違不申候, 左様之御取沙汰ニ至り候而ハ甚難儀いたし候間, 御内々ニ而御聞捨ニ被成被下候様ニと御出馬役ら此方出馬役江被申聞候段相聞候付, 彼方ヘ重而不及挨拶朝鮮人方茂右之通ニ而相濟.’

52) 慶應義塾大學소장, 「御下向江戸御發駕より守山御止宿迄毎日記」 및 「下向道中信使奉行方毎日記」, 마이 크로필름 리번호 37, ゆまに書房, 1999. ‘川越奉行樋口十郎左衛門通詞福山傳五郎江申込朝鮮人得と致合点候様ニ申達させ候處, 軍官ら下之者と相見ヘ扇を以傳五郎腕ヲ打破り非法之働仕候.’

3. 맺음말

사행을 통한 문화교류에 관한 논문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사행의 전반적 여정을 통해 일어난 일은 부사선 소실과 일행 중에서 사망자가 나온 일, 화란제 총 구입 등 외에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奉行方 및 御供方 매일기를 중심으로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과 관련한 종가문서를 고찰함으로써 무진사행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보려고 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쓰시마섬을 떠나 첫 기항지인 가쓰모토에서 삼사를 비롯한 사행이 고래잡이를 구경한 일이었다. 사행이 고래잡이를 구경하는 것도 일본이어서 가능했던 경험이지만 고래잡이 구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사행의 인원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을 당한 자가 중하관이어서인지 또 첫 기항지에서 사행 측 잘못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문책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일본 본토 첫 기항지인 아카마가세키에서 삼사를 비롯한 사행 일행이 아침부터 對馬藩에 말도 없이 관소에서 나와 시중을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아카마가세키에는 적지 않은 규모로 형성된 유곽이 관소 바로 근처에 있어서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지 모르는 정도의 일이었다. 규모는 작지만 다음 기항지에서도 유곽이 있는데 역시 사행 인원이 관소를 빠져 나와 그것도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있었다.

국서를 모시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행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면 사행의 기강해이가 지적되는 사항이다. 사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행하는 對馬藩 측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평화롭다는 말의 이면에 느슨한 분위기가 있던 것이 아닐까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일본 곳곳에 존재하는 유곽과 사행 인원들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욕망에 기인하는 일탈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행록 및 종가문서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사카에서 배를 내려 육지를 왕래하는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했다. 오쓰의 혼진 앞에서는 하마 문제가 발생해 國書附 조선인은 하마하지 않아도 되나 나머지는 혼진 앞에서 하마해야 한다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력행사 문제가 아니라 국서에 대한 무례함이 문제가 되어 결국 對馬藩의 관원 두 명이 귀국처치 되었다. 5월 3일에 발생한 오쓰에서의 하마를 둘러싼 기록은 奉行方·御供方 매일기와 슈쓰바카타(出馬方)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어 奉行方·御供方 매일기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對馬藩의 보고 없이 벌이는 일탈행위·폭력행사를 다루었다. 사행과 사행을 호행하는 對馬藩과의 갈등이 조명된 내용 일색이다. 이는 처음부터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무진사행 중에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7월 12일에는 오사카에서 일본인 의사가 치료한 사행 일원이 치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 기록이 있다. 오사카의 의사는 히구치 도요(樋口道興)이며 오사카에서 화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던 30살의 김복재(金福才) 외 오사카에 체류한 사행 인원 13 명을 치료한 상세한 내용 등을 사행이 귀국한 이듬해에 『韓客治驗』으로 상재(上梓)하기도 했다. 도요(道興)는 근세 문학작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이모부인 것으로도 문인으로서의 면모도 알려져 있다.⁵³⁾

53) 각주 7,8) 함정식 등.

아직 언급 못한 내용들이 많다. 평화로운 사행이라는 한마디로 평가 받고 있는 무진사행이다. 더 사행록 및 신사기록 뿐만 아닌 다양한 사료를 동원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 다양한 연구에 앞서 현재 있는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그 기초가 된다면 아직 언급되지 않은 사행 중의 일들을 살펴볼 필요도 다양한 연구와 동일하게 필요하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자료〉

- 「對州ニ而諸役付并誓旨控」,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번호 652.
- 「御參向京都御發駕ら江戸御着迄御道中毎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문서번호 664.
- 「江戸御在留中毎日記 三冊之内 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문서번호 665.
- 「信使奉行方參向船中毎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문서번호 669.
- 「參向道中毎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문서번호 676.
- 「奉行方 延享信使記録 八 江戸在留中毎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문서번호 677.
- 「信使集書 御留守 御國」,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소장번호 686.
- 「御下向江戸御發駕より守山御止宿迄毎日記」, 慶應義塾大學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7, ゆまに書房, 1999.
- 「御下向京都大坂在留中信使奉行方毎日記」, 慶應義塾大學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7, ゆまに書房, 1999.
- 「下向道中信使奉行方毎日記」, 慶應義塾大學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7, ゆまに書房, 1999.
- 「信使以後御國集書」, 慶應義塾大學소장, 마이크로필름 릴번호 38, ゆまに書房, 1999.
- 홍경해 저, 하우봉 이선아 역, 『수사일록』, 보고서, 2018.
- 暉峻康隆 東明雅 교주, 『井原西鶴①』, 小學館, 1999.

〈저서〉

-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편찬, 『對馬島宗家文書記録類目錄集』, 1991.
- 李進熙, 『李朝の通信使』, 講談社, 1976.
- 정장식, 『使行録に見る朝鮮通信使の日本觀』, 明石書店, 2006.
- 映像文化協會編,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毎日新聞社, 1979.
- 松田甲, 『日鮮史話』 제4편, 朝鮮總督府, 1928.
-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 横山恭子, 『朝鮮通信使迎送體制の研究』, 慶應義塾大學 박사논문, 2014.

〈논문〉

- 구지현, 「1748년 조선 양익와 일본 관익와의 필담 출현과 서적담화 양상」,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 구지현, 「1748년 조선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 김형태, 「1748년 제10차 무진사행 의원필담의 성격 변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미노와 요시쓰구, 「壬戌信使記録の虚と實」, 『일본학연구』 제40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 미노와 요시쓰구, 「壬戌年 信使記録의 集書」, 『한일관계사연구』 제50집,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양홍숙, 「조선후기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의 구성과 역할」,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

학회, 2010.

이경근, 「무진사행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 - 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이효원, 「通信使와 徂徠學派의 교류 양상과 그 의미 文明과 武威의 착종과 충돌,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 『한국문화』 7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진재교,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지식·정보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한태문, 「일본 廣島縣 향토사료에 반영된 조선후기 통신사와 福山藩 文士の 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함정식, 「조선통신사의 의학교류 중 일본 의가의 치험 사례 연구-『韓客治驗』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9, 조선통신사학회, 2009.

함정식·차웅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對麗筆語』, 『韓客治驗』,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 동양한문학회, 2010.

渡辺憲司, 「下關遊女かぶき-女かぶき禁止令と地方遊里-」, 『日本文學研究』 19号, 梅光女學院大學日本文學會, 1983.

〈인터넷〉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1년 하반기 월례발표회 일정

- 제195회 월례발표회 : 9월 11일
- 제196회 월례발표회 : 10월 2일(10월 9일이 한글날 공휴일인 관계로 한주 앞서 개최 예정)
- 제197회 월례발표회 : 11월 13일
- 제198회 월례발표회 : 12월 11일

하반기(9~12월) 발표를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총무이사 이승민(crinoid@dg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일관계사연구》 72집 발간 보고 및 73집 논문 투고 안내

- 《한일관계사연구》 72집이 2021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73집은 2021년 8월 31일자로 발간됩니다. 투고 기한은 발간 2달 전까지(6월 30일)입니다.
-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 |
|--------|------------------------|--------------------|
|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
|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 |

[계좌번호] 국민은행 297602-00-002428 <예금주> 이승민

4. 학회 발전기금

- 전임회장이신 현명철 선생님께서 학회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쾌척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학회지 발간지원금 수혜

-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실시한 ‘2021년 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 발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